

미국장로교 헌법 개정 제안서

이 *규례서* 개정안은 제227회 총회(2026)의 승인을 거쳐
노회의 투표에 상정되었다.

총회 정서기의 인사말

미국장로교 제227회 총회(2026)는 교단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규례서*의 문구 변경 제안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도록 노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노회 표결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투표 전에 노회원들과 서기들이 각 개정안과 관련 정보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각 개정안에는 위원회와 본회의 양쪽에서 안건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 항목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록 전체를 PC-Biz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문서 전반에 걸쳐 총회 항목 번호로 연결되는 실시간 링크가 제공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www.pc-biz.org의 PC-Biz에 접속하여 검색(Search)와 총회 위원회(Assembly Committee)를 차례로 클릭한 뒤 안건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건 번호를 클릭하면 요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자문위원회 및 기타 자문·옹호 기관들의 근거와 조언은 이 책자 안에 각각 요약하여 담아 놓았습니다. 이 조언은 총회가 승인한 최종 버전이 아니라 최초의 안건에 적용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회들은 각 제안된 개정안이 개별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한, 동의 안건(consent agenda)이나 일괄 상정 동의(omnibus motion)를 사용하여 개정안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 개정안과 합의안에는 26-A, 26-B 등의 추적 번호가 부여됩니다.
- 노회 서기들은 **2027년 7월 3일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1시 59분**까지 투표 집계 결과를 총회 사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과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는 서기 포털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매월 업데이트된 집계 결과가 모든 노회 서기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2027-2029년 *규례서*를 시일 내에 개정하고 출판하기 위해, 이 마감일보다 앞서 투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준비하시며 귀한 시간을 내어 세심하게 살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지현 목사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

색인

26-A — F-1.0305	4
26-B — G-2.0102.....	11
26-C — G-2.0104c	14
26-D — G-2.06.....	21
26-E— G-2.0601	27
26-F — G-2.0603	32
26-G — G2.0603	34
26-H — G-2.0606	36
26-I — G-2.0606	38
26-J — G-2.0606 title.....	40
26-K — G-2.0607.....	53
26-L — G-2.0607	55
26-M ---G-2.07 rename	Error! Bookmark not defined.
26-N----G-2.1002	
26-O----G-2.1002	
26-P----G--2.1002	
26-Q----G-2.1002	
26-R----G-2.1101	
26-S----G-2.1101	
26-T----G-2.1103	
26-U----G-3.0106	
26-V----G-3.0106	
26-W----G-3.0206	
26-X----G-3.0301	
26-Y-----G-3.0301	
26-Z-----G-3.0606	

저작권 © 2026
총회 사무국
미국장로교

미국장로교 노회는 출판 주체의 사전 허가 없이도 이 출판물을 복사할 수 있다.

26-A — F-1.0305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열린 태도

F-1.0305 (RUS-01-1)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편에 F-1.0305 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F-1.0305 공적 영역에서의 신실한 증언

교회는 공적 영역에서 신실한 증언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정의와 평화와 자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한다. 교회는 국가 권력을 통하여 기독교를 특권적이거나 지배적인 세력으로 세우려는 이념, 또는 종교적 정체성을 국가적·인종적·민족적 우월주의와 동일시하는 이념을 배격한다. 그러한 이념은 그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에 배치되고, 신학적 오류를 구성하며, 교회의 신실한 증언을 훼손하고, 교회에 반한다.

배경과 근거

기독교 민족주의는 국가 정체성과 기독교 정체성을 융합하려 하여 신앙과 정치를 모두 왜곡하는 위험하고 점점 더 만연한 이념이다. 이 헌의안에서 요청된 행동들은 배타적인 정치적 권한과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왜곡하는 신학에 반대하는 복음에 대한 교회의 변함없는 헌신을 확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사랑, 평등, 포용, 평화, 종교의 자유, 그리고 모든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는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약속과 공적인 증언에 위배된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두려움과 폭력의 강압적이고 분열적인 이념으로 대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침묵할 수 없다.

기독교 민족주의의 커지는 위협

기독교 민족주의는 미국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장해 왔으며, 정치인들은 종교적 언어를 동원하여 이민자, 유색인종, 성소수자(LGBTQIA+), 종교적 소수자, 여성, 아동 및 기타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는 해로운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2025. 2. 퓨리서치 보고서를 포함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주류 개신교인의 54%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국가"라는 용어가 미디어와 정치 담론에서 대중화되었지만,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도덕적 틀을 넘어 국가가

특정 종교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특권을 부여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국가 정체성과 기독교 정체성을 혼동하는 것은 미국장로교가 이미 헌신하고 있으며 민주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주류 개신교인의 57%는 공립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찬성하고, 63%는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지하며, 60%는 도시와 마을이 공공재산에 종교적 상징물을 전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찬성한다.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를 시민 영역에 포함시키려는 열망을 반영하며, 국가가 다른 신앙 전통과 비신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단일한 종교적 틀을 장려할 권한이 있다는 위험한 가정을 강화한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교회는 강력하고 공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복음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정의, 포용, 평등이라는 복음적 가치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사회를 재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신학적 신앙고백적 거부

미국장로교는 오랫동안 정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헌신을 확고히 해왔다.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의 주권 위에 국가적 또는 정치적 권한을 높이려는 어떠한 신학도 거부하는 우리의 신앙고백 문서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 바르멘 선언(1934)은 교회가 어떠한 정치 이념과도 결탁해서는 안 되며, 기독교 신앙과 국가 권한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천명한다.
- 1967년 신앙고백은 교회가 제도적 불의와 인종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 벨하 신앙 고백(1986)은 국가적 또는 인종적 우월성을 조장하는 모든 형태의 신학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 신앙에 대한 간략한 진술서(1991)는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확인한다.

이러한 신앙고백들은 교회의 충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상기시키며, 기독교 신앙과 정치 권한을 결합하려는 모든 시도는 복음을 왜곡하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이러한 신학적 약속과 국적, 인종, 성별, 지위 또는 신조에 관계없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행동하라는 교회의 부르심

미국장로교는 종교의 자유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또한, 교회는 인종 정의, 성소수자 포용, 이민자 보호, 그리고 종교 간 연대를 위한 공적 증언과 헌신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이러한 원칙들을 모두 위반하며,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훼손하는 복음의 왜곡이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침묵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온전함과 민주주의의 치유 모두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제기한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다원적인 사회에 단일한 종교적 정체성을 강요하려 한다. 미국장로교는 모든

사람을 급진적으로 포용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 규례서를 개정하고,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광범위한 연합의 기여 회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 헌의안의 요청된 행동들은 기독교를 국가 권한과 결합시키려 했던 신학적 왜곡과 정치적 이념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단계이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과 민주주의, 정의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기독교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우리의 신앙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지원 자료

도서

- 아만다 타일러, *기독교 민족주의를 끝내는 방법*. BJC, 2022.
- Brian Kaylor와 Beau Underwood, *미국에 세례를 주다: 주류 개신교가 기독교 민족주의를 건설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가*. 살리스 프레스, 2024.
- Robert P. Jones, *White Too Long: The Legacy of White Supremacy in American Christianity* (2020); *The Hidden Roots of White Supremacy and the Path to a Shared American Future* (2023).
- Samuel L. Perry와 Andrew L. Whitehead, *Taking America Back for God: Christian Nationalism in the United States* (2020).

보고서와 기사

- 공공종교연구소(PMRI) – 기독교 민족주의, 종교와 정치, 인종,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https://www.ppri.org>
 -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미국인의 신념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2021.
 - *공적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2025.
- GACEIR,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에 맞서다*. Presbyterian Church (U.S.A.)
- 전국교회 공의회, *기독교 민족주의 정책 성명서*, 2022년.
- 미국장로교 총회 이민, 종교 자유, 성소수자(LGBTQIA+) 포용, 인권, 반인종주의와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성명서(특히):
 - *인종차별에 맞서기*, 제222회 총회, 2016.
 - *차별 없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결의*, 제223회 총회 2018년
 -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 권장 연구*, 제226회 총회, 2024
- Sojourners, “ICE, 새로운 선전 영상에서 성경 인용,” Sojourners, 2025. 7. 11., <https://sojo.net/articles/opinion/ice-quotes-bible-new-propaganda-video>

기관과 웹사이트

- 공공종교연구소 (PMRI) – [ppri.org](https://www.ppri.org)
- Faithful America – faithfulamerica.org

- 침례교 종교 자유 공동 위원회 (BJC) – bjconline.org
- 기독교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기독교인 – christiansagainstchristiannationalism

자문 및 옹호 위원회는 총회 위원회에서 개정된 원래의 헌의안에 대해 조언을 제시했으며, 이후 총회는 대체 동의안을 승인했다.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로부터

헌법자문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 제1부가 총회가 고려해야 할 헌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음을 권고한다.

근거

헌법위원회는 미국장로교 신앙고백서가 교단 총회 정서기와 의장이 기독교 민족주의의 양상에 대한 풍부한 신학적, 교회사적 역사를 바탕으로 성명을 발표하도록 인도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이는 우리 시대의 시급한 신학적, 사회적 관심사로 남아 있음을 주목한다. 이러한 신앙고백문은 또한 다른 신앙 전통과 연합을 형성하고, 기독교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공동 행동에 참여하고, 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 기독교 민족주의의 관행, 신학 및 패턴을 해체하는 데 기반을 제공한다. 다음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교회가 그 메시지와 질서의 형태를 자신의 쾌락이나 지배적인 이념적, 정치적 신념의 변화에 따라 포기하도록 허용되었다는 거짓 교리를 거부한다. (신앙고백서; 바르멘 신학 선언. 8. 18.).

우리는 교회가 고유한 사명을 넘어 국가의 특성과 과업과 존엄을 취하여 스스로 국가의 기관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짓된 교리를 거부한다. (신앙고백서; 바르멘 신학 선언. 8. 23.).

비록 국가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한 국가나 어떤 한 생활 방식의 주권을 하나님의 대의와 동일시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그 부르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신앙고백서; 1967년 신앙고백. 9:45).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아래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에 따른 강제 분리를 찬성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사역과 화목된 삶을 미리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모든 교리를 거부한다. (신앙고백서 벨라 신앙고백10.6).

삶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믿는다. 우리는 오직 그 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신앙고백서; 신앙의 간략한 진술서. 11.1).

미국장로교 헌법은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된다. 두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장로교는 이 신앙고백문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교회의 구성원과 세계를 향해 선포한다. 그러나 규례서는 “미국장로교가 우리의 장로교적 교회 이해와 교회 정치체제의 기초가 되는 역사적인 교회 정치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다(F-3.01).

논평 - LGBTQIA+ 옹호 특별 프로젝트 팀

LGBTQIA+ 평등 옹호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년)에서 RUS-01을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 의제는 종종 입법을 넘어 LGBTQIA+ 개인, 종교적 소수자, 이민자 및 유색인종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적극적인 유포와 적대감 조장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이념은 성소수자(LGBTQIA+)를 특정하고 반복적인 표적으로 삼았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조국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이념은 비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이들 공동체와 다른 소외된 집단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1967년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의 보편적인 인간 가족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화목의 사랑으로 형제들 간의 장벽들을 극복하며, 사실 또는 상상의 민족적 또는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깨뜨려 버리신다. 이 고백의 신학적 논리는 인종을 넘어 확장된다. 즉, 어떤 이념이든 특정 공동체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할 때마다 교회는 저항하도록 부름받는다. 우리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지지하도록 부름받았다. 더 나아가 바르멘 신학 선언에서 우리는 “우리는 국가가 인간 삶의 유일하고 전체주의적인 질서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거짓 교리를 거부한다” (8.17)고 선포한다. 우리는 정의, 평화,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 누구도 폭력이나 하나님께서 부여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개혁주의 신념을 지지한다.

RUS-01이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가 폭력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만, 이 이념에 의해 LGBTQIA+ 개인들이 표적이 되었다는 문서화된 사실은 정책의 신학적 틀 내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LGBTQIA+를 포함한 소외된 집단들이 이러한 폭력의 특정 대상이 되어왔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다. FBI의 2024년 증오 범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2,413건의 단일 편향 반(反) LGBTQIA+ 증오 범죄 사건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를 3년 연속 유지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동시에 ACLU는 2026년에만 42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자를 대상으로 하는 740개 이상의 법안을 추적하고 있으며, 2025년은 이러한 법안에 대한 6년 연속 기록적인 해가 될 것이다.

1967년 신앙고백과 바르멘 선언에 이 권고와 변호인을 근거함으로써 우리는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와 그것이 본질적으로 야기하는 인권 침해를 거부하는 개혁주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장로교가 이미 채택한 이 신앙고백들은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가 교회의 자체적인 약속과 양립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교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교회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충실히 적용하는 것이다.

<https://pcusa.org/resource/book-confessions>

<https://www.splcenter.org/resources/reports/conspiracy-preparation/>

자문 및 변호인 – 여성 및 성 정의 옹호 위원회(ACWGJ)

여성과 성 평등을 위한 옹호위원회(ACWGJ)는 제227회 총회(2026)가 RUS-01을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의 충성이 어떤 지상의 권한이나 이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 이 보고서는 복음과 국가적 정체성을 혼동하고 인간의 체계를 그리스도의 주권 위에 두는, 점점 커지는 왜곡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교회가 그 메시지나 선교를 지배적인 정치적 신념에 따르게 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권위나 성격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신앙고백서, 바르멘 선언 8.18, 8.23). 이 순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전통의 충실한 계승이다.

이 보고서는 대중의 증언을 이끌고, 신앙 공동체 간의 협력을 장려하며, 우리의 신앙고백적 기준에 우리의 응답을 근거함으로써 교회가 온전하게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의와 겸손, 이웃 사랑의 복음임을 확증하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우대하거나 교회를 국가의 야망에 묶어두는 어떤 가르침도 거부한다(1967년 신앙고백, 9.45; 벨하 신앙 고백, 10.6).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에 교회의 증언에 명확성과 용기를 모두 제공한다.

저회는 미국장로교가 기독교 가르침의 오용과 그 가르침의 실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교단이 미디어를 통해 공공 영역으로 나아가 교단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러한 종교적 우월주의가 예수의 가르침에 반하고 교회의 목적에 완전히 위배됨을 드러낼 것을 촉구한다.

미국 개혁주의 정체성 총회 위원회는 개정이 포함된 RUS-01 항목을 52대 4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는 RUS-01 항목의 대체 동의안을 458대 15로 승인했다.

RUS-1 전체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32/business>

26-B – G-2.0102

교회의 직제 사역

G-2.0102 직제 사역 (ORD-07 D)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102항의 직제 사역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0102 직제 사역

신약에 서술되어 있으며 본 교단이 유지해온 교회의 직제사역은 집사와 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장로)다. 직제사역은 교회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사역이 풍성해지도록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각 직무는 동등하게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며 갖추어 주시는 방식에 있어 "어느 한 직무가 다른 직무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제2 헬베틱 신앙고백 5.160, 5.161, 5.162).** 이러한 직제사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교회 전체 사역에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교회의 운영은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는 하나님 백성의 권리는 결코 양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체교회나 교단의 공의회가 선출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해당 조직에서 직제사역을 맡을 수 없다.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교역 장로로 부르기도 함)에 대한 안수는 해당 직제 사역에 따라 각기 고유하다.

배경 및 근거 - 안수 신학 및 실천 탐구 특별 프로젝트 팀

직제 사역이 비계층적이라는 확신은 개혁 신학과 장로교회의 역사적 증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확신은 “한 목회는 다른 목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5.160–5.162)고 가르치는 제 2 헬베틱 신앙고백에 명시되어 있다. 개혁 전통은 초기부터 안수가 우월성, 특권 또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여기는 어떠한 개념도 거부하며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강조해 왔다. 안수는 대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화해의 목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공유한다.

이러한 틀 안에서 집사, 치리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는 직제 사역은 위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의 목회가 번성하도록 교회의 삶이 잘 정돈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목회들 간의 구분은 기능과 소명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지, 존엄성, 가치 또는 권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장로교회는 성직자주의와 단일 직책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반대해 왔으며, 대신 협력적이고 공유되며 상호 의존적인 리더십 모델을 지지해 왔다. 각 직제 사역은 고유한 소명에 응답한다. 집사는 공홀과 예배로 인도하고, 사역 장로는 운영과 영적 감독을 행사하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한다. 이러한 목회들은 경쟁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며, 서열화되기보다는 상호 책임적이다. 제2 헬베틱 신앙고백서가 목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를 특권과 배제의 패턴으로부터 보호하며, 안수는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충실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임을 교회에 상기시킵니다.

문화적, 교회적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적 맥락에서, 위계적이지 않은 직제 사역의 본질을 재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이 헌신은 권위가 관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사되고, 성령께서 봉헌한 다양한 헌금들을 존중하며, 고린도전서 12장에 묘사된 몸의 일치를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이 원칙을 굳게 지킴으로써 교회는 모든 헌금이 소중히 여겨지고 모든 목회가 하나님의 공동 선교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는 부르심에 더욱 온전히 응답하게 된다.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로부터

헌법자문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 안수 특별 프로젝트 팀 보고서 권고 D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F-1.0201)를 인정하고 교회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분(F-1.0202)으로서 미국장로교의 신학적, 정치적 기초와 일치함을 권고한다.

직제 사역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도록 준비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G-2.0102). 제 2 헬베틱 신앙고백과 함께 1967년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교회는 헌법, 정부, 임원, 재무, 행정 규칙을 갖춘 기관으로서 그 삶을 영위한다. 이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도구이다. 다른 직제들도 복음을 섬겨왔으며, 그 어느 것도 배타적인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장로교 정치체제는 모든 교인이 목회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며, 교회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유지한다. 장로회 정치는 교회나 세속 사회의 세력과 야심으로 말미암은 착취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교회 규례는 화해의 선교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개혁에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9.40)

또한 바르멘 신학 선언은 “교회의 다양한 직분들은 어떤 직분이 다른 직분 위에 군림하는 것을 확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체교회에게 위임되고 부여된 목회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8.20)

따라서 헌법자문위원회는 승인을 권고한다.

자문과 변호인 - 인종 민족 자문위원회

이 개정안은 목회 직분은 기능에서 다를 뿐 존엄, 가치, 권위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개혁교회 신념을 확증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인종/민족 지도자들, 특히 사역 장로와 집사들을 저평가했던 패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신학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D항을 포함한 ORD-07 항목을 50 / 9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년)는 D항을 포함한 ORD-07 항목을 389 / 84로 승인했다.

ORD-07에 대한 전체 보고서와 안수 신학 및 실천 탐구 태스크포스 전체 보고서는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8/busin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C — G-2.0104c

교회의 직제 사역

G-2.0104c 은사와 자격 (RAC-04 4b)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104c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0104 은사와 자격

c. 반인종차별 교육

사역 준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노회는 직제 사역 지망생과 후보생이 교회에서의 섬김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반인종차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훈련은 노회가 정하는 주기와 방식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총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배경과 근거

교회 내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노력이 되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전의 충실한 사역에 이의 제기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를 드러내고 무너뜨릴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와 각 개체교회와 모든 공의회가 우리 교단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 사역을 지역적으로 그리고 연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저희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1. 제226회 총회 이후, 당회와 중간공의회는 반인종차별 정책을 채택해야 했다. 귀하의 개체교회나 중간공의회는 정책을 채택했습니까? 귀하의 노회는 어떤 개체교회가 정책을 채택했고 채택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습니까(연례 회의록 감사 체크리스트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그리고 귀하의 노회는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합니까? 당회나 중간공의회는 정책을 매년 감사하고, 여러분이 함께 그 정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논의합니까? 규례서의 이

요구 사항은 단순히 우리 공의회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참여로의 초대이다.

2. 미국장로교의 교회 전체 반인종차별 정책인 인종차별에 맞서기 (<https://pcusa.org/sites/default/files/Facing-Racism-new-2016-antiracism-policy-for-GA-222-approval.pdf>)를 읽어보셨거나 그 연구 가이드(<https://pcusa.org/sites/default/files/2024-11/facing-racism-study-guide.pdf>)를 사용해 볼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3. 귀하의 개체교회나 중회는 지도자들을 위해 반인종차별 또는 문화적 역량 교육을 제공했습니까?
4. 귀하의 특정 상황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귀하의 교회나 중회 역사를 자체 연구(<https://pcusa.org/historical-society/collections/what-we-collect/products-pcusa-self-studies-racism> 및 <https://digital.history.pcusa.org/islandora/1107>)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장로교가 유색인종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역사, 즉 모든 흑인 통치 기관에 대한 보고서(<https://pcusa.org/sites/default/files/allblackgoverningbodies.pdf>)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5. 제226회 총회에서 채택된 인종차별 진실과 화해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화해를 위해서는 진실과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pcusa.org/sites/default/files/special_committee_on_racism_truth_and_reconciliation_to_225_ga.pdf). 귀하의 개체교회나 중간 공의회가 미국장로교 배상 연구 태스크포스(https://pcusa.org/sites/default/files/report_of_the_task_force_to_study_reparations1_0.pdf), 사회 증언 정책 자문 위원회의 인종, 배상 정의 및 미국장로교에 관한 결의안(<https://www.pc-biz.org/search/3000922>)과 역사적 피해 복구 센터(<https://pcusa.org/about-pcusa/agencies-entities/interim-unified-agency/ministry-areas/repair-historic-harms>)의 작업에 따라 지역 사회 복구 활동에 부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6. 귀하의 중공의회는 유색인 목사들의 급여 및 임명 직무명 불균형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하고 있습니까(<https://www.pc-biz.org/search/3000837>)? 귀 교회의 개체교회는 유색인종 목사님을 청빙하는 데 진정으로 개방적이었습니까?
7. 귀하의 개체교회나 중 공의회는 미국장로교의 보고서인 “발견의 교리: 미국장로교 내 개체교회를 위한 기원과 합의 감사 및 아메리카 원주민 주권 지지” (https://pcusa.org/sites/default/files/2024-11/Doctrine-of-Discovery-Report-to-the-223rd-GA-2018-FINALIZED-COPY_As-Approved.pdf)를 연구하고, 귀하의 지역에 있는 원주민 형제자매 및 개체교회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8. 귀하의 개체교회나 중회는 최근 총회에서 발표된 흑인 여성 및 소녀들이 겪는 불균형 태스크포스 보고서(<https://www.pc-biz.org/search/3000676>),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 소녀, 투 스피릿 인물에 대한 결의안(<https://www.pc->

- [biz.org/search/3000824](http://www.pc-biz.org/search/3000824)), 생식 정의: 흑인 산모와 아동 사망률에 대한 결의안(<https://www.pc-biz.org/search/3000825>), 그리고 유색인종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결의안(<https://www.pc-biz.org/search/3000826>)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드러난 인종과 성별 간의 특정 교차점을 검토했습니까?
9. 귀하의 개체교회나 중간공의회는 노예 제도의 죄와 그 유산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과문(<https://www.pc-biz.org/search/3000895>)에 참여했습니까?
 10. 귀하의 개체교회나 중간공의회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에 대한 폭력과 증오에 반대하는 지역적 방법을 고려해 보셨습니까(<https://www.pc-biz.org/search/3001103>)?
 11. 귀하의 개체교회나 중간공의회는 마태복음 25장 운동에 연결되고 헌신하고 있으며, 예배, 학습 및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https://pcusa.org/about-pcusa/agencies-entities/interim-unified-agency/ministry-areas/matthew-25/resources>)를 활용했습니까?
 12. 여러분의 교회 또는 중간 공의회는 우리의 신앙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 평등, 정의에 대한 신학적 약속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까? 가장 최근에는 제222회 총회에서 풍부한 전례 및 신앙고백적 언어를 제공하는 벨하르 신앙고백(<https://pcusa.org/sites/default/files/belhar1.pdf>)을 우리 신앙고백서에 추가했으며, 관련 연구 가이드(예: <https://www.pcusastore.com/Products/680751/the-confession-of-belhar-leaders-guide.aspx>)도 제공된다. 1967년 신앙고백서(https://pcusa.org/sites/default/files/confess671_0.pdf)와 바르멘 신학 선언(<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95d65a4ff7c50d877d0c81e/t/5f8f3f0e49ca3477e76b0743/1603223322978/THE+THEOLOGICAL+DECLARATION+OF+BARMEN.pdf>) 또한 교회에 모든 형태의 차별, 편견 또는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13. 귀하의 개체교회나 중간공의회는 Stephanie Patterson의 *Horizons*에 실린 “다인종 사회에서 백인 중심주의 탈피(Decentering Whiteness in a Multiracial Society)”(<https://www.presbyterianwomen.org/wp-content/uploads/2019/09/Decentering-Whiteness-in-a-Multiracial-Society-by-Stephanie-M-Patterson.pdf>)와 같은 자료를 통해 백인 중심주의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셨습니까?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로부터

ACC는 최종 보고서 작성에 앞서 특별 위원회의 업무를 감사하고, 권고안에서 제기된 헌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다. 이러한 토의는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합헌이며, 승인을 권고한다.

자문 및 변호인 – 여성 및 성 정의 옹호 위원회(ACWGJ) 제공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서 RAC-04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위원회는 총회가 이 결의안을 승인하고, 지도부와 개체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 반인종차별 정책의 채택 및 관심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강력한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 대표성 위원회(GACOR)의 조언 및 변호인

총회 대표성 위원회는 우리 교단을 구성하는 다양한 언어의 참여를 포함하여 미래 총회를 위한 제안된 변경 사항을 비롯해 이 최종 보고서에 담긴 권고 사항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지한다. 교회의 다양성 속의 일치는 예배, 공의회, 친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에 반영된다.

권고 사항 4항과 5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반인종차별 훈련이나 교육은 BIPOC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인종차별의 시스템과 구조를 다루는 데 필요한 첫걸음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를 준비하고, 개체교회를 섬기며,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일이다. 역사, 시스템적 영향, 그리고 상호 연결된 해악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신학적 기회에 대해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 내 역사적으로 백인 중심의 모든 교단에게 중요하고 충실한 사역이다. 수리 작업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충실한 노력은 미국장로교회 삶에서 이 순간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이나 반인종차별에 대한 의무 교육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혼합된 결과를 가져왔으며, 효과 크기는 중간에서 작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명확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고 교회가 반인종차별 훈련을 통해 광범위하게 스스로를 준비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공식적인 연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한 형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일하고 규정 준수에 초점을 맞춘 노력에 필요한 작업량을 고려할 때, 명확한 연구 결과의 부족은 최소한 규례서의 의무가 보고서가 제안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올바르게 주요한 제도적 수단인지에 대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총회 대표성 위원회는 반인종차별 훈련/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이고 적응 가능한 모델로, 잘 개발되고 미묘하며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1. 본 보고서 항목 2a의 맥락에서 미국장로교 신앙사역국이 교단의 공의회를 위한 검증되고 잘 주석된 반인종차별 훈련 옵션을 포함하여 강력한 훈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여기에는 현재 최고의 연구와 지역 공동체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인종 및 교회 역사의 배경에 적응하며, 기본적인 것을 넘어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을 위임하고 마련하는 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의 역사나 현재 시스템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훈련을 위한 "모범 사례"를 제안할 수도 있다.

1.

근거: 이러한 수준의 견고한 자원 네트워크는 특정 지역의 특정 필요에 대해 전국 직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현재의 전국적인 구조와 중간 공의회가 자원을 확보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련의 지시보다 반인종차별 교육의 빈도, 가용성 및 전반적인 참여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 그리고, 숙련되고 수준 높은 반인종차별 훈련을 제공할 수 없는 노회에 필요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현금한다.

근거: 필요에 기반한 보조금 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동기나 요구 사항보다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인해 적절하고 유용한 반인종차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역량이 저해될 수 있는 중회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보다 집중적인 노력(또는 준비)을 통해 명확하고 수준 높은 반인종차별 교육 옵션 개발과 장기적인 교육 이행에 일반 주간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더 광범위한 의무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 지속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 유용하게 강조하고, 수준 높고 일관된 이행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제시하며, 더 명확한 목표 결과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중한 전략은 특별위원회 권고안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작업을 희석시키거나 해로운 지연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깊은 효과성, 충실성, 그리고 진심을 다해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바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인종 정의 위원회는 RAC-04 4b 59/0 안건을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 RAC-04 4b, 448/26.

RAC-04와 미국장로교와 인종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전문은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9/business>에서 확인하십시오.

26-D — G-2.06

공의회 일반원칙

G-2.06 목회 준비 (ORD-02)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6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06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준비

배경과 근거

"목회"라는 용어는 항상 말씀과 성례전의 직제 사역보다 더 광범위했다. 교회의 여러 사역과 소명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교회는 사역 장로와 집사 및 안수받지 않은 개체교회 회원의 사역이 개체교회 생활의 귀중한 부분임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규례서 제2장은 이러한 목회 형태 중 일부에 대한 섹션으로 시작한다.

G-2.06과 G-2.07 조항의 이름을 목회의 유형을 명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회"의 의미와 교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목회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태도를 제시한다.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로부터

이 헌의안은 규례서를 개정하여 G-2.06 목회 준비와 G-2.07 안수 아래 특정 섹션의 명칭을 변경하고 순서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헌의안은 해당 섹션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CC는 규례서의 재편성이 명확성을 제공하고 주제 제목과 더 잘 일치하도록 하는 가치 있는 노력이며, 그 자체로 어떠한 헌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수많은 번호 매겨진 섹션에 대한 상호 회부 의뢰서 때문에 해당 회부 의뢰서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예: G-2.0104b, G-2.0505, G-2.0610 참조 (내부 참조).

협력

ACC는 또한 다른 안건들이 지망생과 후보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요건의 변경 또는 재편성을 제안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

총회 신학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항목 ORD-02를 52대 5로 승인했다. 제227차 총회(2026)는 항목 ORD-02를 447대 10으로 승인했다.

안건 ORD-02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8/business>를 보라.

26-E — G-2.0601

목회 사역 준비

G-2.0601 안수직의 본질과 목적 (ORD-07 A)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601항 안수의 본질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0601 목회 준비의 성격과 목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 받으려는 이는 노회의 지도 하에 사역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과, 또 그들의 당회, 개체교회와 언약관계를 맺어야 한다. 언약 관계는 지망과 후보의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 **노회는 목회 후보생 준비를 담당하는 노회 기구의 구성원들(지망생과 후보생의 연락관으로 봉사하는 이들을 포함함)을 위한 교육을 보장해야 하며, 이 교육이 최소 3년마다 완료되고 노회 회의록에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차별 없는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반인종주의, 상호문화 역량, 암묵적 편견 인식, 그리고 LGBTQIA+ 지망생과 후보생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수 신학 및 실천 탐구 특별 프로젝트 팀 배정 및 근거

배경:

안수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개발하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 팀은 신학과 성경적 증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이 정의는 지난 몇 년 동안 태스크포스의 사역과 분별을 이끌어 왔다.

안수는 개인이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특별한 예배를 위해 구별되는 수단이다. 안수 행위를 통해 이 목회에 임명된 이들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적 증언 사이의 채권을 증명하며, 참된 안수자이자 헌금을 베푸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상기한다.

“안수”라는 용어는 라틴어 *ordo*(직분)와 *ordinare*(정돈하다)에서 유래한다. 성경에 안수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이 구별되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같은 성경 구절에 그 기초가 나타나 있다. 안수는 목회 자체와 동의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가 분별되고 질서 있는 과정을 통해 특정 책임을 위해 개인을 따로 세우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안수는 세례와 언약 공동체의 공유된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안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 언약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관계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묶여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목사들과 개체교회들, 그리고 서로에게 상호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현대 언어에서 언약(covenant)이 계약(contract)이나 합의(agreement)의 대체어로 자주 사용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틀이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우리의 신앙고백서들은 첫 언약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졌음을 상기시켜 준다. 인류가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6.037-42). 성경 전체에서 언약은 일관되게 공동체적인 범위에 걸쳐 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모든 인류를 포괄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을 온 백성과 결속시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인봉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제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유대인과 그리스인, 종과 자유인, 모든 성별의 사람들에게(갈라디아서 3:28) 은혜의 언약을 온 세상에 열어 주셨다. 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 매인 자들은 서로에게도 매여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러한 공동체적 실재를 설명하며,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와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회원으로서 그분과 서로 교제하는 채권과 보증”이라고 명명한다(6.161). 따라서 언약에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라는 여러 관련 당사자들이 포함된다.

장로교 정치 체제에서 이 언약적 관계망은 교회의 모든 교회 공의회, 개별 개체교회와 거룩한 공교회에 걸쳐 확장된다. 신앙에 대한 간략한 진술(1993)은 소명이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목회로 부르신다”(11.4)고 강조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소명만을 강조하는 것이 직제 사역의 공동체적 차원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는지 묻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집사, 사역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봉사하라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차의 시작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특정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헌신이기도 한다 (고린도전서 3:9).

그렇다면 하나님과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섬기는 공의회와 개체교회 간의 언약의 산물로서 직제 사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67년 신앙고백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각 회원은 세상에 있는 교회이며, 성령으로부터 목회를 위한 은사를 받아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증언의 온전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공동체의 조언과 교정을 따라야 한다. 그는 자신의 역량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준다” (9:38).

교회가 집사, 사역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는 직제 사역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언약적 이해는 기초와 방향을 모두 제공한다. 이는 우리가 이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함께 노력할 때, 개체교회와 지도자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 상호 책임, 그리고 신실한 분별력을 요구한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공동체의 조언과 교정을 따라야 한다.그는 자신의 역량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준다”(9:38).

근거

2024. 11. 18.부터 2025. 5. 5.까지 특별 프로젝트 팀은 14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 중 7회는 지망생 및 후보생들과, 7회는 지난 5년 이내에 안수받은 목사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부록 A 참조). 46명의 지망생과 후보생, 그리고 지난 5년 이내에 안수받은 53명의 목사가 참여했다. 모든 그룹에서 목회 후보생 준비 위원회 또는 노회 내 동등한 기관과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일부 참가자들은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의 제기를 보고했다.

- 과정의 시작이나 도중에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위원회 의장과 연락 담당자들로 인한 일부의 불만. 그들은 종종 위원회 의장과 연락 담당자들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야 했다.
- 예를 들어, 임기 제한 때문에 연락 담당자가 전체 과정 동안 지망생/후보생과 함께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에 특별 프로젝트 팀은 노회 전반에 걸쳐 보다 일관된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과정에는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회원, 즉 새로 임명된 사람과 계속 봉사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연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제에는 개인, 교회, 노회,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한 인정; 과정 소개; 안수 시험 개요; 그리고 지망생 또는 후보생의 연락 담당자로서 봉사하는 책임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별 프로젝트 팀은 이 교육이 교단 사무실의 적절한 기관에 의해 개발되어 서면 형식으로 제공되며, 선택적으로 비디오 구성 요소도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훈련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노회에 제공되어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회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의 기록을 회의록에 보관해야 한다.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로부터

태스크포스 권고안 A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준비를 담당하는 노회 기관에 훈련을 의무화할 것이다. 이것은 지원을 담당하는 이들의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노회 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지망생들과 후보생들의 경험에 응답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본문은 또한 준비 과정의 목적을 위한 네 가지 훈련 과목이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헌법자문위원회(ACC)는 총회가 고려해야 할 다음 문제들을 지적한다. “sh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노회 기관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훈련이 의무화될 것이다. 헌법 서문 참조 (“SHALL과 IS TO BE/ARE TO BE는 의무적인 실행을 의미한다.”). 첫째, 이 권고안은 “지망생과 후보생을 위한 연락 담당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다. 연락 담당자(liaisons)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일 수 있지만, 규례서에 의해 요구되거나 정의된 바는 아닙니다. 권고안 A는 연락 담당자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ACC는 헌법이 사명 수행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권고해 왔다. 일반적으로 이는 요구사항 목록이나 요구사항 구현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변호인 입장이다. 이는 그러한 목록이나 지침이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규례서가 일반적으로 공의회에 유보하는 재량권(G-3.0106: 당회보다 상위 공의회는 자문 핸드북에 수록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의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 실례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실행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실행은 공의회의 재량이다. 또한 이와 같은 참고 자료집은 특정 공의회의 사역을 향상시키거나 견고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네 가지 훈련 과목의 개정된 내용은 추가적인 개정 없이는 개정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 헌법 본문에 고정하기보다는 노회의 자문 핸드북에 실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셋째, “준비 과정이 차별로부터 자유롭도록”이라는 조항은 필수 훈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결과를 명시하며, 개정된 본문에는 이에 대한 준수 조치가 없다. 헌법적 언어로서 이러한 종류의 결과 기준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절차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이 완료되고 기록되었는지(이는 일반적으로 회의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여부에서 특정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로 질문을 전환시킬 수 있다.

ACC는 "이 훈련은 3년마다 완료되어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가 어색하다고 덧붙였다. 훈련 자체가 완료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총회가 이 조항의 본질을 유지해야 한다면, ACC는 그 의무를 노회에 부과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정된 문구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노회는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회원들에게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3년마다 완료되고 회의록에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성소수자 평등 옹호를 위한 위원회(ACQ+E)의 ORD-07 A에 대한 자문 및 조언

성소수자 평등 옹호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가 Ord (07)을 [총회에서 채택된 개정]과 함께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ORD-07 에 대한 인종 형평성 옹호 위원회(REAC)의 조언 및 권고 사항

성소수자 평등 옹호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가 Ord (07)을 [총회에서 채택된 개정]과 함께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REAC은 안수 신학 및 실천 탐구 특별 프로젝트 팀(Task Force to Explore Theology and Practice of Ordination)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 프로젝트 팀은 후보생들,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 공동체 출신들의 경험을 경청하고 중요한 진실을 밝혀냈다. 즉, 공정하게 의도된 시스템이 실제로는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 안수에는 노회, 신학교, 교단 기관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한다. 불평등은 후보생들이 공식적으로 평가받기 훨씬 전부터 교육, 자원, 문화적 기대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일찍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이러한 권고는 이미 제한된 역량과 고르지 못한 자원을 가진 시스템에 새로운 책임을 부여한다.

REAC는 이 작업의 방향을 확인하면서도 핵심적인 긴장감을 지적한다. 즉, 교회의 형평성에 대한 헌신이 이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구조와 책임감으로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치가 없다면, 선의의 개혁 안에서도 불평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REAC은 이 작업을 강화하고 충실하고 지속 가능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개정안을 제안한다.

B. 연례 교육

REAC는 총회가 다음 추가 사항과 함께 개정 A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될 텍스트는 [대괄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노회는 목회를 담당하는 노회 회원, 즉 지망생과 후보생의 연락 담당자를 포함한 회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 교육이 매년 완료되고 노회 회의록에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공정하고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분별과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반인종주의, 문화 간 역량, 편견 인식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회는 또한 지망생과 후보생으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고 감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소외된 공동체 출신자들의 경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 피드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훈련, 분별 및 평가 관행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훈련만으로는 공평한 결과를 꾸준히 이끌어내지 못했다. 책무성과 피드백이 없으면 훈련은 변화의 촉매제가 아닌 요구 사항이 될 수 있다. 훈련과 후보생 피드백을 결합하면 관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고 불평등이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결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일 전권위원회 의견

안수 신학 및 실천 탐구 특별 프로젝트 팀 보고서에는 몇 가지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장로교 신앙사역국(PL&W)에 재정적, 물류적 과 직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권고안 A와 B는 노회에 추가적인 요건을 부여하지만, PL&W 직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노회 기관에는 이미 교육과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권고안은 노회가 훈련을 제공하고 신원 조회 등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노회는 역사적으로 Presbyterian Life & Witness (PL&W) 직원에게 지침과 자료를 요청한다.

신학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안건 ORD-07 A를 50대 9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는 안건 ORD-07 A를 389대 85로 승인했다.

ORD-07에 대한 전체 보고서와 안수 신학 및 실천 탐구 태스크포스 전체 보고서는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8/busin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F — G-2.0603

목회 준비

G-2.0603 지망 단계의 목적 (ORD-07 B)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운영체제의 G-2.060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0603 지망 단계의 목적

지망 단계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사역에 부름받았다고 믿는 이들과 교회가 그 소명을 함께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해서, 노회가 직제사역에 대한 지망생의 적합성을 여러 정보를 갖고 판단하게 하는데 있다. ~~이들은 성적 비행 주체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는 성적 비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경계 교육,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 반인종차별 교육을 이수했음을 보여주는 수료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교육은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해서 승인해야 한다. **노회는 지망생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지망생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노회는 지망생 기간 동안 심리사회적 및 소명적 검사를 포함한 지망생 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안수 신학 및 실천 탐구 특별 프로젝트 팀 배경 및 근거

배경

26-E의 배경을 참조하세요.

근거

G-2.0603에는 36개월마다 경계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위원회나 전권위원회가 지망생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과 만날 때, 이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점과 발전시키거나 양육할 수 있는 헌금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망생이 등록된 후에는 노회가 신원 조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감독하에 목회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체교회나 다른 환경에서 목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별 프로젝트 팀은 또한 지망생이 자신의 강점과 성장 영역에 대한 자기 지식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준비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심리사회적 및 직업 평가 도구는 트라우마 이력과 정신 건강 및 웰빙의 일반적인 지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회의를 포함할 수 있다.

지망생과 임상가 간의 초기 오리엔테이션 회의, 이어서 평가 및 후속 인터뷰를 통해 결과를 감사하고 사실 오류를 수정하며 지망생이 제기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다룬다. 평가 보고서가 확정되면 지망생과 그의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기관 모두와 공유되어야 한다.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

권고 B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7회 총회에 COM 22-B 항목을 승인하도록 권고한다.

근거

이 항목은 규례서 G-2.0603을 개정하여 조사 절차 시작 시 지망생에 대한 신원 조회를 완료하고, 준비 절차의 조사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및 직업적 목록을 포함한 필수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의 어떤 조항도 이 제안된 일반적인 관행을 규례서에 추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헌법자문위원회(ACC)는 제221회 총회(2014)에 안건 06-04와 관련하여 “운영 체제는 우리의 공동 생활 형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고안되었다”고 조언했다. 운영 매뉴얼, 총회 진행 규정 또는 지침에 더 잘 포함될 절차와 세부 사항은 의도적으로 피한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국장로교 전반에 걸쳐 배경 조사 및 기타 확인 절차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규례서에 배경 조사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 노회 사명 수행 지침서의 특정 절차적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교회의 확립된 관행을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ACC가 제221회 총회에 추가로 권고한 바와 같이:

많은 노회는 이미 청빙 위원회에 변호인하는 의무의 일환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포함한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G-3.0301c에 따라 노회는 이미 교역 장로를 받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시 및 수용 전에 적절한 신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211회 총회(2019)에서 승인된 헌법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1999, 65, 706, 12.013-019, CR 97-1)은 노회가 목사 회원 및 목회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리 및 정신과적 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합헌임을 확인한다. 즉, “노회는 목회 후보생을 평가하는 데 심리 및 정신과 서비스를 활용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회가 배경 조사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시행하는 데 헌법적 장벽은 없다.

협력

다른 헌의안들이 지망생과 후보생의 요건 변경 또는 재편성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총회에 알린다.

ORD-07 B에 대한 인증 형평성 옹호 위원회(REAC)의 조언 및 권고 사항

성소수자 평등 옹호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가 Ord (07)을 [총회에서 채택된 개정]과 함께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REAC은 안수 신학 및 실천 탐구 특별 프로젝트 팀(Task Force to Explore Theology and Practice of Ordination)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별 프로젝트 팀은 후보생들,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 공동체 출신들의 경험을 경청하고 중요한 진실을 밝혀냈다. 즉, 공정하게 의도된 시스템이 실제로는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 안수에는 노회, 신학교, 교단 기관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한다. 불평등은 후보생들이 공식적으로 평가받기 훨씬 전부터 교육, 자원, 문화적 기대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일찍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이러한 권고는 이미 제한된 역량과 고르지 못한 자원을 가진 시스템에 새로운 책임을 부여한다.

REAC는 이 작업의 방향을 확인하면서도 핵심적인 긴장감을 지적한다. 즉, 교회의 형평성에 대한 헌신이 이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구조와 책임감으로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치가 없다면, 선의의 개혁 안에서도 불평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REAC은 이 작업을 강화하고 충실하고 지속 가능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개정안을 제안한다.

신원 조회(Background Checks)

REAC는 총회가 다음 추가 사항과 함께 개정 B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될 텍스트는 [대괄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노회는 지망생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지망생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노회는 조사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및 직업적 조사를 포함하여 지망생 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노회는 모든 평가 및 신원 조사가 문화적으로 유능하고 편견을 인지하는 관행을 사용하여 수행되고 해석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인종/민족, 이민자 및 다국어 공동체 출신 후보생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도구가 분별과 결정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의사소통해야 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중립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는 더 광범위한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다. 신원 조사는 인종/민족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표준화된 평가는 유럽 중심적 가정을 반영하거나 문화적 차이를 오해할 수 있다. 언어 장벽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회마다 관행이 크게 다르고 이러한 도구들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REAC는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소수자 평등 옹호를 위한 위원회(ACQ+E)의 ORD-07 B에 대한 조언 및 변호인

성소수자 평등 옹호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가 Ord (07)을 [총회에서 채택된 개정]과 함께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신원 조회(Background Checks)

REAC는 총회가 다음 추가 사항과 함께 개정 B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될 텍스트는 [대괄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노회는 지망생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지망생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노회는 조사 단계에서 지망생에게 심리사회적 및 직업적 목록을 포함한 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역량을 입증하는 제공자가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정체성을 병리화하지 않고 목회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신원 조회 및 평가는 LGBTQIA+ 문화적으로 유능한 편견 인식 관행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좋다.]

통일 전권위원회 의견

안수 신학 및 실천 탐구 특별 프로젝트 팀 보고서에는 몇 가지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장로교 신앙사역국(PL&W)에 재정적, 물류적 과 직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권고안 A와 B는 노회에 추가적인 요건을 부여하지만, PL&W 직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노회 기관에는 이미 교육과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권고안은 노회가 훈련을 제공하고 신원 조회 등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노회는 역사적으로 미국장로교 신앙사역국(PL&W) 직원에게 지침과 자료를 요청한다.

신학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ORD-07 B 항목을 50 / 9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년)는 ORD-07 B 항목을 389 / 85로 승인했다.

ORD-07에 대한 전체 보고서와 안수 신학 및 실천 탐구 태스크포스 전체 보고서는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8/busin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G — G-2.0603

G-2.06 목회 준비

G-2.0603 지망 단계의 목적 (CON 09)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운영체제의 G-2.060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0603 지망 단계의 목적

지망 단계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사역에 부름받았다고 믿는 이들과 교회가 그 소명을 함께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해서, 노회가 직제사역에 대한 지망생의 적합성을 여러 정보를 갖고 판단하게 하는데 있다. ~~이들은 성적 비행 주제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승인된 훈련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배경과 근거

훈련 요건이 규례서에 추가되었을 때, 삽입된 문구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모호하다. 현재 형태로서는 경계 훈련을 36개월마다 재인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36개월이 아동 학대 예방에만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훈련에 대한 언어가 정책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다. 즉, "아동 성적 학대 예방 훈련"과 "취약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보호 정책"이 다르다.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을 때 일부 삽입도 잘못 배치되었다. 훈련 요건을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는 의도였지만, 일부 사건에는 문구의 배치를 재고해야 한다.

지망생/후보생의 경우, G-2.0603 “Purpose of Inquiry”에 해당 언어가 삽입되었지만, 이 교육은 조사 목적과 관련이 없다. 이 요건에 더 적절한 곳은 안수 전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다루는 섹션일 것이다.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로부터

협력

ACC는 다른 현의안이 본 항목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훈련 요건에 대한 변경 또는 재조직을 제안하고 있으며 조정이 필요할 것임을 총회에 알린다.

편집자 주: 이 제안된 개정안은 개정안 24-H와 함께 진행된다.

헌법 해석 총회 위원회는 ACC의 자문을 받아 현의안 문구를 개정하고 안건 CON-09,을 41/7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는 안건 CON-09를 465/4로 승인했다.

안건 CON-09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30/business>를 보라.

26-H — 2.0606

G-2.06 목회 준비 (CON-09)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운영체제의 G-2.060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0606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교육과 훈련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준비하는 이들은 성적 비행을 주제로 포함하는 경계 훈련을 수료해야 하고, 아동 및 청소년 학대 예방 훈련을 수료해야 하며, 최소 36개월마다 갱신하는 이 훈련들의 수료증을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회는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승인된 훈련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배경과 근거

훈련 요건이 규례서에 추가되었을 때, 삽입된 문구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모호하다. 현재 형태로서는 경계 훈련을 36개월마다 재인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36개월이 아동 학대 예방에만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훈련에 대한 언어가 정책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다. 즉, "아동 성적 학대 예방 훈련"과 "취약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보호 정책"이 다르다.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을 때 일부 삽입도 잘못 배치되었다. 훈련 요건을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는 의도였지만, 일부 사건에는 문구의 배치를 재고해야 한다.

지망생/후보생의 경우, G-2.0603 “Purpose of Inquiry”에 해당 언어가 삽입되었지만, 이 교육은 조사 목적과 관련이 없다. 이 요건에 더 적절한 곳은 안수 전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다루는 섹션일 것이다.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

협력

ACC는 다른 헌의안이 본 항목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훈련 요건에 대한 변경 또는 재조직을 제안하고 있으며 조정이 필요할 것임을 총회에 알린다.

자문 – 여성 및 성 정의 옹호 위원회(ACWGJ)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서 CON-09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과 성 정의 옹호 위원회는 안전, 책임, 돌봄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헌신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하고 사려 깊은 노력으로서 이 헌의안을 지지한다. 경계 및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이 조치는 여성, 아동 및 기타 피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하는 일관된 관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사역이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 신뢰, 진실성, 정의의 공동체를 육성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확인한다.

권고 - 성소수자 형평성 옹호 위원회(ACQ+E)

LGBTQIA+ 형평성을 위한 옹호 위원회(ACQ+E)는 제227회 총회(2026)에 CON-09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성 관련 위법행위 및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 학대 예방을 포함한 경계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편집자 주: 이 제안된 개정안은 개정안 24-H와 함께 진행된다. 26-H 또는 26-I가 승인되면 단락 번호는 그에 따라 조정된다.

헌법 해석 위원회는 CON-09를 41/7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는 CON-09를 465/4로 승인했다.

안전 CON-09,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30/business>를 보라.

26-I — G-2.06

G-2.06 목회 준비 (ORD-02)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운영체제의 G-2.060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0606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교육과 훈련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은 노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협의회(ATS)의 인가 신학 기관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 교육 과정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학습,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한 구약과 신약의 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배경과 근거

...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받기 전에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 및 훈련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하위 섹션을 추가하여...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

이 헌의안은 규례서를 개정하여 G-2.06 목회 준비와 G-2.07 안수 아래 특정 섹션의 명칭을 변경하고 순서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헌의안은 해당 섹션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CC는 규례서의 재편성이 명확성을 제공하고 주제 제목과 더 잘 일치하도록 하는 가치 있는 노력이며, 그 자체로 어떠한 헌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수많은 번호 매겨진 섹션에 대한 상호 회부 의뢰서 때문에 해당 회부 의뢰서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예: G-2.0104b, G-2.0505, G-2.0610 참조 (내부 참조).

협력

ACC는 또한 다른 안건들이 지망생과 후보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요건의 변경 또는 재편성을 제안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

24-H 또는 24-I가 승인되면 단락 번호는 그에 따라 조정된다.

신학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ORD-02 항목을 52 / 5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년)는 ORD-02 항목을 447 / 10로 승인했다.

안건 ORD-02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8/business>를 보라.

26-J — G-2.0606

G-2.06 목회 준비

G-2.0606 언약 관계 기간 중의 섬김(ORD-02)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운영체제의 G-2.060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0606 노회 돌봄 아래 **지도받는 사역** 언약 관계에서

배경과 근거

G-2.06과 G-2.07 조항의 이름을 목회의 유형을 명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회"의 의미와 교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목회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태도를 제시한다.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

이 헌의안은 규례서를 개정하여 G-2.06 목회 준비와 G-2.07 안수 아래 특정 섹션의 명칭을 변경하고 순서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헌의안은 해당 섹션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CC는 규례서의 재편성이 명확성을 제공하고 주제 제목과 더 잘 일치하도록 하는 가치 있는 노력이며, 그 자체로 어떠한 헌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수많은 번호 매겨진 섹션에 대한 상호 회부 의뢰서 때문에 해당 회부 의뢰서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예: G-2.0104b, G-2.0505, G-2.0610 참조 (내부 참조).

협력

ACC는 또한 다른 안건들이 지망생과 후보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요건의 변경 또는 재편성을 제안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

26-H 또는 26-I가 승인되면 단락 번호는 그에 따라 조정된다.

신학 교육 및 목사안수 위원회는 안건 ORD-02를 52대 5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는 안건 ORD-02를 447대 10으로 승인했다.

안전 ORD-02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8/business>를 보라.

26-K — G-2.0607

G-2.06 목회 준비

G-2.0607 섬김에 대한 최종 평가와 논의 (ORD-07 C)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607 섬김에 대한 최종 평가와 논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후보생은 그가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의 승인 없이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섬기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 노회는 후보생이 노회의 안수 시험 자격을 갖추고 청빙을 기다리고 있음을 인증한 시기를 기록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후보생의 지혜와 성숙한 믿음, 지도력, 긍휼의 마음, 정직성, 건전한 판단력.
- b. ~~각 권역에서 인준받은 대학이나 종합대학, 또는 노회가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한 해외 학교에서~~ 양호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을 보여주는 성적 증명서.
- c. 노회가 인정하며 '신학교 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가 인준한 신학 교육 기관이 발행한 성적 증명서. 여기에는 이수한 과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활용 신구약 해석학이 그 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모든 이수 과목에서의 양호한 성적과 졸업생이거나 졸업 예정자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d. 시험 자료. 그리고 해당 자료가 총회가 승인한 표준 목사안수 시험에서 다루는 각 영역의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평가 결과. ~~노회가 구성한 조직이 이 시험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표준 목사안수 시험 또는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 중 하나일 수 있다. 후보생의 목사안수 준비를 담당하는 노회 기구와 후보생은 표준 시험과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의 가능한 조합을 포함하여 어떤 평가 자료를 사용할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1) 표준 목사안수 시험은 노회들이 구성된 기구에 의해 출제, 시행 및 평가되어야 한다.

(2)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을 사용하는 경우,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은) 노회들이 구성한 기구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후보생이 이를 작성할 수 있다. 후보생 소속 노회에서 목사안수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는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을 평가한 후, 그 안수시험과 평가 결과를 최종 평가를 위해 노회들이 설립한 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 또는 노회가 승인한 기타 평가는 노회들이 구성한 기구가 수립한 문화적으로 역량 있고 편견을 인식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노회들은 평가 관행이 일관되고 투명하며, 반인종주의, 상호문화 역량, 그리고 형평성 있는 평가 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보장해야 한다.

배경과 근거

학부 인증 요건 완화를 통한 진입 기회 확대

지역 인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사본 요구 사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는 지역 인가 학교에서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을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문화권의 지망생 및 후보생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다른 지망생과 후보생들은 성경 대학에서 과정을 이수했을 수도 있다.

현재 표준 안수 시험에 대한 성찰

현행 안수 고시 제도는 제116차 총회(1976. 00. 00.)에서 미국장로교에 도입되었고 제117회 총회(1977. 00. 00.)에서 승인되었다. 당시에는 표준화된 평가가 안수를 위한 준비도를 판단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그 후 수십 년 동안 교회와 더 넓은 교육 공동체는 직업 준비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시험의 중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에 따르면 성경 내용과 같은 표준화된 고시는

고시는 종종 후보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이러한 시험은 이민 교회 출신 후보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그들의 모국어, 문화적 틀, 예배 관행이 고시에서 전제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신학적 깊이, 목회적 역량, 신실함과 관계없이 표준화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된 고시로는 후보생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알거나 그들의 소명, 훈련, 그리고 목회에 대한 헌신의 깊이를 파악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부록 G 참조)

현재 교회는 성경 내용 시험(BCE)과 정치, 예배 및 성례전, 신학, 성경 해석의 네 가지 표준 안수 시험을 통해 후보생의 역량을 평가한다.

BCE는 응시자가 특정 성경 구절을 기억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시간제 객관식 평가이다. 매년 두 번만 제공된다. 준비하려면 일반적으로 수백 개의 이전 질문이 담긴 문제

은행 학습과 새로운 자료에 응답하기 위한 일반적인 성경 지식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암기가 필요하다.

BCE의 구조는 의도치 않은 목회적 결과를 초래한다. 불합격한 후보생들은 노회가 다른 고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안수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시를 반복해서 다시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이 공유된 환경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안수 과정 초기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안수 목회에 대한 추구를 중단하거나 끝내기에 충분할 만큼 낙담하게 만드는데, 이는 소명이나 헌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평가 자체의 구조 때문이다. (부록 E와 F 참조)

표준 안수 시험 또한 상당히 어렵다. 이 고시는 1년에 세 번만 실시되며, 후보생들은 최대 8일 연속으로 집중적인 시험에 응해야 한다. 신학교 수업, 직장 의무, 돌봄 책임, 그리고 휴식과 안식일의 필요가 이 일정과 자주 상충한다. 대체 날짜는 제공되지 않으며, 시험 기간 동안 후보생들이 겪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누적 부담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이다.

정치, 예배과 성례전 고시는 각각 9시간짜리 3부 시험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4일 이내에 치러지며 엄격한 단어 제한이 있다. 성경 해석 고시는 이 기간과 겹치며 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후보생은 이름, 성별 또는 성적 지향, 인종 또는 문화적 정체성, 지리적 맥락, 신학교 소속, 장애 여부 또는 생활 경험을 포함하여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익명성은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가자들이 후보자의 신학과 해석이 맥락, 목회 환경, 살아있는 신앙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많은 노회는 반복되는 시험 불합격에 대해 대안 고시를 제공하여 응답한다. 이러한 관행은 목회적 관심을 반영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매우 다양하며 공통된 기준이나 평가 척도가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의 고시 모델이 한때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교회의 분별 요구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전인적인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엄격하고, 상황에 맞으며, 목회적이고, 실제적인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새로운 선택지

여기서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으로 제시된 추가 평가 모델은 분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이 선택 사항은 후보자의 소명과 목회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안수 시험과 완전히 동등하게 간주된다. 이 시대와 장소에서 교회는 후보자의 문화적 배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와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방식과 특정 목회 환경 내에서 그 부르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증언한다.

에세이를 작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중요하며, 따라서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중요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관계를 분명히 표현하며, 개혁 신앙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에너지, 지성, 상상력과 사랑으로 봉사할 능력을 보여주는 데 후보생 본인보다 더 나은 증인이 있겠는가?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을 통해 후보생들은 익명의 고시 즉각적인 답변이 아닌, 통합된 전체로서 자신의 형성 과정을 자신의 목소리로 제시할 수 있다.

이 특별 프로젝트 팀은 후보생과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기관 간의 언약 관계를 재정립하여, 안수 서약에서 고백하는 동료 사역자들 간의 동료애와 우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이 기관들이 후보생들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그들의 고유한 은사와 목회적 관심사를 이해하며, 보살핌과 세심함으로 그들과 동행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과정은 후보생들이 첫 안수 부르심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으로써 언약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강점과 성장 영역을 모두 파악하는 사람 중심의 평가를 우선시함으로써, 이 접근 방식은 후보생들과 그들이 배우고 봉사하는 노회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새로운 소명을 가진 후보생들은 갱신이 필요한 노회에 에너지, 창의성,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경우가 많다. 의도적인 격려, 멘토링, 동반은 후보생들이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추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접근 방식은 기존 고시와 관련된 익명성 및 엄격한 시간 제약이라는 이전 요건을 제거한다. 대신, 후보생들은 자신의 교육, 경험, 은사, 소명 의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찰하고,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기관에 누적된 사역 및 신학적 성찰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초청된다. 교회는 이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의 다양하고 교차적인 정체성과 그들이 섬기는 다양한 맥락이 분별의 장애물이 아니라 안수받은 목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적인 차원임을 확증한다.

이 모델의 사용

이 특별 프로젝트 팀은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과 표준 안수 시험을 동등하게 수용 가능하고 포괄적인 선택지로 구상한다.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은 후보생이 후보생으로 접수되고 소명 준비가 되었다고 인증되기 전, 일반적으로 신학교육 마지막 해 또는 졸업 직후에 표준 안수 시험과 통상적으로 관련된 후보생 평가 시점에 제공될 것을 권장한다.

포트폴리오는 본질적으로 총체적이어야 하며, 요구되는 모든 평가 영역을 다루는 단일하고 포괄적인 작업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후보생 자격 기간 이후부터 소명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은 목회 후보생의 준비 상태를 평가하는 대안적 선택지로 특별 프로젝트 팀에 의해 권장된다. 후보생은 노회에서 준비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여—표준 안수 시험 또는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 중—선호하는 평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필요에 따라 학업 지도교수, 감독관 또는 개인 멘토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후보생들은 신학대학원 과정, 현장 교육, 교회 또는 목회자 인턴십, 기타 목회 경험에서 얻은 작업을 활용하고 적용하도록 권장된다. 포트폴리오 자료는 후보자의 교육적 형성, 영적 분별력, 그리고 실제 목회 환경에서의 리더십을 반영해야 한다.

이 포트폴리오는 후보생이 첫 소명을 찾을 때 목회 관심사, 헌금 및 기술을 강조하는 개인 식별 프로필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요소는 지원자의 선호도와 소명 의식에 따라 다양한 역량을 다루는 개별적인 부분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엮일 수도 있다.

목회 준비 평가 과정 책임 기관을 위한 조언

이 과정의 목적은 후보생들에게 그들의 교육, 경험, 소명 의식을 제시할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조력자가 후보생의 고유한 은사와 안수 예배를 위한 준비 상태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부록 C에 제공된다.

포트폴리오의 범위

지원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역량:

1. 교회 정치
2. 성경 해석과 성경 내용
3. 예배와 성례전
4. 고전 신학 및 현대 신학

1. 정치 체제

후보생들은 목회 환경에서 미국장로교 규례서를 적절하게 참조하고 준수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후보생들은 규례서를 활용하여 목회 경험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보여주는 성찰적인 글을 제출해야 한다. 성찰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목회 환경 개요,
- b. 평가할 경험에 대한 설명,
- c. 규례서에서 5개 이상의 인용 그리고
- d. 후보자가 경험에 대해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모범 사례에 대한 권장 사항을 사려 깊게 반영한 내용이다.

성경 내용과 주해

특별 프로젝트 팀은 후보자의 목회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성경 내용 고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 성경 과정 이수와 포트폴리오 또는 시험을 통한 주해 평가 완료는 기본적인 성경 이해력을 평가하기에 충분한다.

후보생들은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 성경 구절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학술 자료를 활용하며, 성경 해석을 목회 현장에 사려 깊게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후보생은 두 가지 성경 주해 프로젝트 –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 – 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생들은 한 구절을 철저히 주해한 다음, 그 주해를 현대 목회 상황에 적용하는 창의적인 작품(설교, 성경 공부, 발표, 멀티미디어 예술 작품 등)에 통합해야 한다.

성찰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학술적 주석 작업
 - i. 선택된 번역본 또는 후보자의 성경 원문 번역본,
 - ii. 본문 원어의 최소 세 단어에 대한 어휘 연구와 학술 자료를 참고하여,
 - iii. 본문에 대한 주석과 역사적 맥락을 철저히 검토하고,
 - iv. 사용된 모든 회부 의뢰서에 대한 소환장과 참고 문헌.
- b 목회 발표
 - i 목회 환경 및 대상에 대한 개요.
 - ii 현대 목회 상황에 성경 해석학을 적용한 독창적인 작품.
 - iii 이 발표는 설교, 성경 공부, 프레젠테이션, 멀티미디어 예술 작품 등 – 다양한 창의적인 형태로 현대 목회 상황에 성경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후보생은 두 가지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 하나는 히브리어 성경 구절에 대한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 성경 구절에 대한 프로젝트이다.

3. 예배와 성례전

후보생들은 말씀과 행동으로 은혜의 신비를 보여주는 성례전적 표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을 보여주어 그들의 증언과 봉사를 강화하는 장로교인 예배 예식을 준비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G-2.0501]

후보생들은 두 가지 예식을 준비해야 한다. 두 예식 중 하나는 성례전 준수를 특별히 포함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교회 생활에서 특별한 절기나 기념일을 가리켜야 한다.

두 예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목회 환경에 대한 개요와 전례 행사/절기, 참여자, 예배 공간에 대한 설명.
- b 가능한 한 많은 원본 구성 요소를 사용하되, 다양한 전례 자료를 인용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 c 성경, 기도, 음악 선정, 설교/메시지 개요를 포함한 장로교 예배의 요소.
- d 이 예배가 규례서 지침을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성찰과 인용.

- e 후보자의 예배 계획 과정과 예배 경험의 영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간략한 성찰.
- f 후보생은 녹음 제출, 찬송가 선택, 주보, 예배 시각 자료, 예배 공간 사진 또는 기타 창의적인 예배 계획 표현물 등의 멀티미디어 제출을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고전 신학 및 현대 신학

후보생들은 개혁 신학의 핵심 개념을 의사소통하고 이 신학을 목회 현장이나 현대 문제와 연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후보생은 다음을 포함하는 성찰적인 글을 제출해야 한다.

- a 개혁 신학의 핵심 성경적 주제
- b 신앙고백서에서 인용한 3개의 인용문
- c 고전 시대 신학자 (1900년 이전)
- d 현대 신학자 (1900년 이후)
- e 목회 환경 또는 현대적 쟁점에 대한 개념 적용

노회 평가 도구는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교단들의 포트폴리오 모델은 부록 D를 참조하세요.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7회 총회에 ORD-07-C항목을 승인하도록 권고한다.

근거

본 항목은 규례서 G-2.0607을 개정하여 직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증거 목록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러한 권고된 개정 사항에는 학부 학위 성적 증명서 요건에서 만족스러운 성적 취득 및 보고 의무를 삭제하고, 학부 학위를 취득한 대학이 지역적으로 인가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제안된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이 대안적이고 동등한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시험 자료를 노회가 심사하고, 해당 자료가 총회가 승인한 표준 목사안수 시험에서 다루는 각 영역에서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G-2.0607d).

목회 준비 과정과 안수 및 고시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2012년 총회와 2014년 총회에서 이루어졌다. 제220회 총회(2012)에서 이관된 안건 07-07, 안수 고시 작성, 시행 및 채점 과정 재평가(회의록, 2012, 제1부, 682쪽)에 대한 응답으로, 목회 준비 과정 및 표준 안수 고시 감사 특별 위원회는 안수 고시의 의도된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2014년 보고서(회의록, 2014, 제2부, 06 - 교회 체제 및 직제 사역, 안건 06-12)의 근거에서 “적합성 또는 준비성”과 “적절성” 사이의 다음 구별을 언급했다.

표준 서면 안수 시험은 목회에 대한 “적합성”을 분별하도록 고안되지 않았다. 후보생 자격 단계에서는 “적합성과 준비성”이 확립되어야 하며(G-2.0604), 표준 필기시험은 그 작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G-2.0607d). 규례서의 언어로 “적합성”은 조사 단계(G-2.0603)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시험 목적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표준 서면 안수 시험의 역사를 고려했다. 이들은 노회들이 교단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후보생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갖도록 설립되었다. 개별 노회는 다른 노회에서 온 후보생이 개혁주의 신학적 및 목회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목회 상황에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었다. 이 고시 방식은 후보생을 평가하는 유일한 교단 전체 표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이 방식이 유지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신학교들이 학생 평가의 일환으로 필기 고시와 시간제한 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그러한 시험은 후보생들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학대학원 재학 중 특정 학생들에게 다른 과제와 고시 형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으며, 일부 특정 과목은 시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했다.

필기식 정시 시험을 단순히 신학교 방식을 모방하기 위해 유지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둘째, 노회에서 자료를 평가하여 “총회가 승인한 표준 안수 시험이 다루는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자료로 선언할 수 있도록 고시 자료를 제출하는 대안적인 동등한 형식으로 고위 안수 포트폴리오가 제안되었다(G-2.0607d). 따라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체 고시 방식의 사용에 대한 헌법적 금지지는 없다.

논평- 후보생을 위한 노회 목사 고시 협력 위원회 (PCC)

노회 목사 고시 협력 위원회(PCC)는 후보생 고시 절차를 재검토하고 가능하면 개정하라는 요청을 확인한다. 그러나 목회적, 재정적, 물류적 함의를 고려할 때, PCC는 총회가 권고 Cii를 부결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Cii는 헌법상 PCC(G-2.0607)인 “노회들이 만든 기관”을 의미한다.

근거

1965년에 설립된 PCC는 “안수 후보생에 대한 고시를 담당하는 노회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돕고, 모든 노회에 보다 공평한 기대 기준을 제시하며, 안수 고시를 준비하는 후보생들에게 보다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CC 운영 원칙).

PCC는 주로 안수 고시의 준비 및 행정을 담당하며, 노회에서 선출된 고시 채점관을 조직하고 훈련하여 시험을 평가하는 역할도 한다. 총회는 성경 내용, 성경 해석, 신학적 역량, 예배와 성례전과 교회 체제의 다섯 가지 시험 영역을 승인했다.

PCC는 시험 출제를 위해 매년 대면으로 모이며, 노회에서 선출된 독자들이 시험을 평가하고 감독하기 위해 매년 3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회의를 진행한다.

제안된 개정은 PCC의 책임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험 방법인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을 포함한다. 이 권고안은 또한 PCC에 포트폴리오와 표준 시험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을 부여하는데, 이는 PCC에 부여된 적이 없는 역할이자 전례 없는 권한이다.

안수 시험은 모든 후보생을 평가하는 공통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상황에 따라 G-2.0610은 개별 후보생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대체 시험을 노회가 관리하고 평가하도록 승인한다. 따라서 G-2.0607에 포트폴리오 옵션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목회적 함의

현재 시행되는 시험은 모든 노회에서 선출된 독자들이 익명으로 평가한다. PCC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익명 감사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이 단계에서의 익명성은 후보생 평가에 있어 최대한의 형평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된 G-2.0607d(1)에 따라 PCC의 역할에 평가 기능이 추가되면, 평가자는 각 노회가 선출한 수백 명의 독자에서 현재 24명의 PCC 위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에서 노회가 시험과 포트폴리오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채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회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는 한 노회가 다른 노회보다 더 많은 평가 옵션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노회 간의 불균형과 후보생들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노회가 시험만 요구하도록 허용된다면, 이 개정의 목적은 무효가 된다.

제안된 G-2.0607d(2)는 포트폴리오의 최종 평가가 PCC에 있음을 명시한다. 노회가 아닌 외부 단체가 G-2.0607d의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형평성 및 헌법 질문이 발생한다.

재정적 영향

PCC의 업무는 시험 등록비로 충당된다. 이 제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경 사항은 후보생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러한 결과만으로도 승인을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개정된 G-2.0607d는 PCC가 포트폴리오의 형식, 지침,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건은 PCC가 포트폴리오 개정 작업도 감독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제안된 개정안에서 PCC는 기존 시험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려면 PCC 회원 수를 최소 6명 늘려야 하며, 이로 인해 연례 회의 비용이 참가자 1인당 약 \$2,500.00 증가한다.

이 기관이 노회가 선출한 시험 평가자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대신 포트폴리오 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추가적인 대면 회의가 필요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역량을 결합하므로, 총회에서 요구하는 5가지 시험 역량을 모두 다루는 포트폴리오는 후보생에게 최소한 5개의 표준 시험과 동일한 비용이 들 것이다.

운영상의 영향

PCC의 임무에 "평가"가 추가되면 회원들은 지역 교회, 노회, 직업, 가족에 대한 다른 의무 외에 몇 주의 대면 봉사를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 PCC는 이러한 변화가 젊은 성인, 사역 장로, 이중직 목사, 아동이나 다른 가족을 돌보는 이들, 그리고 많은 단독 목사들이 PCC에 지혜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교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고시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이미 어려운 과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권고 Cii를 승인하려면 PCC의 기본 원칙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 이 문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PCC에서 개정 및 승인된다. PCC의 지도 원칙에 대한 변경 사항은 2028년에 열리는 제228회 총회에 상정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해당 회의 이후까지 포트폴리오 구현이 지연될 수 있다.

현재의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평가 방법은 PCC의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선출하며, 훈련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시행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

현재의 지도 원칙에 따라서 PCC는 후보생과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시험 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계속 시행할 것이다. PCC는 신학 교육의 변화하는 환경과 교회의 새로운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한 개정 논의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PCC는 미국장로교에서 목회 후보생을 평가하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적절하게 엄격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 작업의 중요성, 변경 사항의 재정적 영향, 그리고 모든 변경 사항이 후보생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PCC는 권고 Cii의 부결을 권고한다.

권고 - 성소수자 형평성 옹호 위원회(ACQ+E)

REAC는 총회가 다음 추가 사항과 함께 개정 C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2)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은 노회들이 구성한 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목회 후보생이 작성하여야 한다. 후보생의 노회에서 목회 후보생을 준비하는 책임 기관은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그 포트폴리오와 평가서를 최종 평가를 위해 노회들이 설립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LGBTQIA+ 개인의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관점과 장로교인 교회 생활에 대한 퀴어 신학의 공헌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혁 신학적 관점의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성소수자(LGBTQIA+)들은 교회에서 온전한 포용을 이루는 데 계속해서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규례서는 우리 교회가 완전한 포용을 지향하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을 차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조사와 후보생들이 직제 사역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노회가 임명한 감독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조언 - 인증 형평성 옹호 위원회(REAC)

REAC는 총회가 다음 추가 사항과 함께 개정 A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될 텍스트는 [대괄호 안에 밀줄]로 표시된다.)

[(3)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 또는 노회가 승인한 기타 평가는 노회들이 구성한 기구가 수립한 문화적으로 역량 있고 편견을 인식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노회들은 평가 관행이 일관되고 투명하며, 반인종주의, 상호문화 역량, 그리고 형평성 있는 평가 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보장해야 한다.]

REAC는 공평한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없이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므로 주의를 촉구한다. 공유된 표준, 명확한 지침, 충분한 자원 없이는 포트폴리오가 기존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불평등의 장이 될 위험이 있다.

REAC는 특히 필요한 구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 총회가 보다 조율되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시범 적용 상황과 공유된 평가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단계별 구현은 공평하고 일관된 결과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

REAC는 "regionally accredited" 학부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는 다양한 교육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후보생들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포트폴리오는 준비 상태를 평가하는 보다 전체적인 방법으로 가능성을 제시하며, 표준화된 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후보생들을 더 잘 지원한다. 그러나 노회는 역량과 자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안전장치가 없으면 기대치와 결과가 불균형해질 수 있다.

REAC는 표준 시험 유지를 하나의 선택지로 지지하면서도, 형평성, 더 강력한 언어 지원, 그리고 평가자들 간의 더 큰 다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감사를 요구한다. 유연성만으로는 형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교회는 목회 준비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REAC는 준비성이 학업 성과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며, 교회가 다양한 공동체와 상황에서 은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언한다.

논평 - 신학교육 위원회

권고 C(ii)는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을 통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며, 초기 평가 책임은 돌봄 노회에 부여되고 최종 평가는 노회들이 설립한 기관에서 담당한다. 후보생 평가를 위한 명확한 대안 경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두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 첫째, 포트폴리오 생성 또는 평가에 대한 표준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포트폴리오 모델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포트폴리오 작성 또는 평가를 위한 표준 없음 — 태스크포스의 근거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잠재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개정안은 포트폴리오가 “노회들이 만든 기관이 정한 표준” (G-2.0607d.2)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평가 도구와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대체 평가 방식을 제공한다.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성을 추구한다:

“노회들이 만든 기관”은 표준 안수 고시를 준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기 위해 노회들이 만든 기관, 즉 후보생 시험을 위한 노회 목사 고시 협력 위원회(PCC)와 동일한 기관으로 추정되는 것 같다. 이것이 과연 그 기관이며,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올바른 기관인가?

COTE와 관련된 기관들은 인가 기준을 준수하고, 의도된 지식과 역량을 측정하는 평가를 설계하며, 학습자들이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경험이 있다. 안수를 위한 단일 최종 평가만큼 중요한 평가 도구를 만드는 일은 큰 의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적절한 평가를 설계하려는 의도 없이 규례서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미국장로교와 관련된 신학교들은 학생들이 미국장로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 포트폴리오와 안수 고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동일할까요?

포트폴리오 모델은 불평등과 차별의 기회를 만듭니다. — 다시 한번, COTE는 안수 고시만으로는 후보자의 소명 준비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특별 프로젝트 팀에 동의한다. 그러나 더 큰 분별력과 변화된 감독이 없다면, 포트폴리오가 해결에 실패하고 심지어 제거하도록 고안된 불평등을 영속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1977)에서는 목회 준비도를 평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안수 시험을 도입했다. 노회에서 평가를 없애는 것은 후보생들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지역 교회와의 전반적인 관계 때문에 안수를 거부당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노회마다 문화적 역량이 다르므로, 특정 후보생을 다른 후보생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준비시키며 양육할 수 있다. 권고된 개정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여지를 제공한다.

(1) G-2.0607d.2는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기관과 후보생이 “어떤 고시 자료를 사용할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교단 전체에 걸쳐 기준과 결정의 통일된 적용이 부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G-2.0607d.2는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기관을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평가자로 지정하여, 안수 시험의 익명성으로 인해 마련되었던 보호 장치를 없앱니다.

태스크포스의 근거는 표준 안수 시험과 신학교 졸업예정자 안수시험을 "완전히 동등한 것"으로 지지한다. 포트폴리오를 취합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도구가 없다면, 기대치와 평가가 실제로 동등한지 알 수 없다. 이는 두 단계의 고시 절차를 만들며, 노회들이 고시 선택을 결정하는 데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편집자 주: 26-H 및/또는 26-I가 승인될 경우, 이에 따라 각 단락의 번호가 조정된다.

신학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ORD-07 C 항목을 50 / 9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년)는 ORD-07 C 항목을 389 / 85로 승인했다.

ORD-07에 대한 전체 보고서와 안수 신학 및 실천 탐구 태스크포스 전체 보고서는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8/busin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L — G-2.0607

G-2.06 목회 준비

G-2.0607 섬김에 대한 최종 평가와 논의(ORD -02)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607 섬김에 대한 최종 평가와 논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최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후보생은 그가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의 승인 없이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섬기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 노회는 후보생이 노회의 안수 시험 자격을 갖추고 청빙을 기다리고 있음을 인증한 시기를 기록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후보생의 지혜와 성숙한 믿음, 지도력, 긍휼의 마음, 정직성, 건전한 판단력.
- b. 각 권역에서 인준받은 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양호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을 보여주는 성적 증명서.
- c. ~~노회가 인정하며 '신학교 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가 인준한 신학 교육 기관이 발행한 성적 증명서. 여기에는 이수한 과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활용 신구약 해석학이 그 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G-2.0606의 교육 요건에 따라 모든 학업 영역에서 양호한 성적과~~ 졸업생이거나 졸업 예정자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d. 시험 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가 총회가 승인한 표준 목사안수 시험에서 다루는 각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에 있음을 확인하는 평가서 노회가 구성한 조직이 이 시험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배경과 근거

...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받기 전에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 및 훈련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하위 섹션을 추가하여...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

이 현의안은 규례서를 개정하여 G-2.06 목회 준비와 G-2.07 안수 아래 특정 섹션의 명칭을 변경하고 순서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현의안은 해당 섹션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CC는 규례서의 재편성이 명확성을 제공하고 주제 제목과 더 잘 일치하도록 하는 가치 있는 노력이며, 그 자체로 어떠한 헌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수많은 번호 매겨진 섹션에 대한 상호 회부 의뢰서 때문에 해당 회부 의뢰서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예: G-2.0104b, G-2.0505, G-2.0610 참조 (내부 참조).

협력

ACC는 또한 다른 안건들이 지망생과 후보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요건의 변경 또는 재편성을 제안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26-H 및/또는 26-I가 승인될 경우, 이에 따라 각 단락의 번호가 조정된다. 이 항목의 참조 번호도 그에 따라 수정될 것이다. 이 항목은 24-I와 관련이 있으며, 24-I가 승인되어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학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ORD-02 항목을 52/ 5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년)는ORD-02 항목을 447/ 10으로 승인했다.

안건 ORD-02,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8/business>를 보라.

26-M — G-2.07

G-2.07 안수(ORD-02)

제227회 총회(2026)는 총회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7 안수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07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안수

배경과 근거

"목회"라는 용어는 항상 말씀과 성례전의 직제 사역보다 더 광범위하다. 교회의 여러 사역과 소명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교회는 사역 장로와 집사 및 안수받지 않은 개체교회 회원의 사역이 개체교회 생활의 귀중한 부분임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규례서 제2장은 이러한 목회 형태 중 일부에 대한 섹션으로 시작한다.

G-2.06과 G-2.07 조항의 이름을 목회의 유형을 명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회"의 의미와 교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목회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태도를 제시한다.

권고 – 헌법자문위원회(ACC)

이 헌의안은 규례서를 개정하여 G-2.06 목회 준비와 G-2.07 안수 아래 특정 섹션의 명칭을 변경하고 순서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헌의안은 해당 섹션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CC는 규례서의 재편성이 명확성을 제공하고 주제 제목과 더 잘 일치하도록 하는 가치 있는 노력이며, 그 자체로 어떠한 헌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수많은 번호 매겨진 섹션에 대한 상호 회부 의뢰서 때문에 해당 회부 의뢰서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예: G-2.0104b, G-2.0505, G-2.0610 참조 (내부 참조).

협력

ACC는 또한 다른 안건들이 지망생과 후보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요건의 변경 또는 재편성을 제안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

신학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D항을 포함한 ORD-07 항목을 50 / 9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년)는 D항을 포함한 ORD-07 항목을 389 / 84로 승인했다.

ORD-02에 관한 전체 보고서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8/business>

26-N — G-2.1002

G-2.10 사역 장로를 특정 목회 사역에 파송함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

G-2.1001 에 따라 섬기고자 하는 사역장로는 노회가 정한 준비 절차와 지침 사항을 받아들여 특정 파송 사역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한적인 목회 사역을 위한 사역 장로의 교육 및 준비에 관한 교단의 기본 교육 요건을 이수하는 것, 반드시 석사 수준일 필요는 없는 학업, 그리고 장로교 정치, 개혁교회의 예배와 성례전, 개혁교회 신학, 구약과 신약의 성경 해석, 설교, 기독교 교육, 목회적 돌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준비과정에는 성적 비행 주제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수료증은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해서 승인해야 한다. 개인 신앙, 파송 사역에 대한 동기, 노회가 정한 지침 사항과 관련해, 노회는 사역 장로를 심사해야 한다. 특정 사역에 파송되었다가 나중에 사역을 그만 둔 사역 장로는 사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단에 이름을 계속 올릴 수 있으나, G-2.1001에 명시된 직무들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 다만 노회가 이들을 개체교회 또는 사역에 다시 파송하면 이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배경과 근거

규례서(G-2.1001)는 노회가 목회 예배를 위해 사역 장로를 임명할 권한을 확인하지만, 파송된 목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기대치를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 결과, 노회마다 준비 기준이 크게 달라 후보생, 개체교회, 노회 전체에 불일치, 불평등, 혼란을 야기한다.

교육에 대한 교단 차원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노회에 적응, 확장 또는 예외를 허용할 권한을 보존하면서—상황적 분별력을 훼손하지 않고 명확성과 공유된 기대를 제공한다. 공통된 틀은 목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도 노회가 지역적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인 교육 기준은 신학, 정치, 예배와 성례전, 성경 해석, 설교, 기독교 교육, 목회적 돌봄에 대한 일관된 준비를 보장함으로써 위임된 목사 목회의 온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노회 간 인정과 이동성을 지원하여, 상황에 따라 이동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지속성을 제공하고, 위임된 목사들이 섬기는 개체교회에는 신뢰를 준다.

이 권고는 석사 학위 요건을 부과하거나 노회 판결을 대체하지 않는다. 대신, 이는 장로교인의 직제 사역과 지역적 분별에 대한 헌신을 존중하면서 책임성, 형평성, 목회적 준비성을 향상시키는 공유된 기반을 제공한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헌법자문위원회는 제227회 총회에 항목 []이 목적상 헌법에 부합하지만, 총회가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다고 조언한다.

G-2.1002는 CRE로서 제한된 목회 예배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역 장로들의 훈련 과정에서 노회의 권한을 명시한다.

... 노회는 현재 각 특정 전권위원회에서의 예배에 적합한 구체적인 준비와 가르침을 결정할 헌법적 권한을 가지며, 성 관련 위법행위 및 아동 성적 학대 예방 주제를 포함하여 경계 훈련 완료 기준을 충족하는 훈련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간추린 역사

ACC는 목회 준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가 2012년과 2014년 총회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여 언급했다. 제221회 총회(2014년) 06-08항에 대한 응답으로, 신학교육위원회는 CRE 준비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 관점을 제시했다.

최근 신학교육위원회(COTE)가 후원한 전권위원회 사역 장로(CRE) 훈련 프로그램 연구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COTE는 총회로부터 온 교회의 관점에서 신학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CRE 준비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우리는 [회중 환경에서 CRE 사용 확대]를 지지할 수 없다.

신학교육위원회 논평

...태스크포스의 권고는 필요한 연구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1) 준비 및 평가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하고, (2) 노회마다 요구 사항 및 고시 적용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COTE는 우려하고 있다.

준비 및 평가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 개정된 G-2.1002는 준비 및 교육이 규정된 영역에 대한 “반드시 석사학위 수준일 필요는 없는 학업 과정, 그리고 장로교 정치제도, 개혁교회 예배와 성례전, 개혁교회 신학, 구약과 신약의 성경 해석, 설교, 기독교교육, 목회적 돌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송 사역 장로 목회에 대한 역량 식별을 위한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석사 학위 수준이 아니더라도, 노회마다 연구 요건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저회는 과송 목사들을 위한 훈련 요건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회에 따라 최소 3시간의 훈련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신학 석사 학위의 약 1/3에 해당하는 훈련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개혁된 목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고 후보생이 소명에 합당하게 준비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G-2.0601-G-2.607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위한 교육, 분별의 기회, 양육 및 기간을 안내한다. 이 준비 과정은 고시 절차(필요한 교육을 더욱 강화함)와 목회 준비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말씀과 성례전의 분별력 있는 목사를 준비시키고, 양육하며, 평가하는 책임)의 업무에 정보를 제공한다. 점점 더 많은 전권위원회 목사들이 사역에 나서면서, 그들의 양육은 준비 과정에서 동일한 명확한 기대와 목적 있는 동반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중간공의회와 개체교회가 공식인 강단을 채우고자 하는 긴급한 마음에 공감한다. 안타깝게도 더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노회는 전권위원회 목사 교육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여전히 부족하다. 목회 리더십은 엄청난 영광이자 신성한 책임이다. 신학 교육과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한 경향이 변화함에 따라, 전권위원회 목사들은 개체교회 안에서 개혁 신학적 신념과 실천을 목양하는 역할을 맡으며 가르치는 장로의 책임을 점점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COTE는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목회 소명에 대한 높은 부르심을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준비 과정을 형성하기 위해 위임받은 목사 준비를 감독하는 기관과 협력할 기회를 환영한다.

노회마다 요건 적용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

G-2.1002는 섬기고자 하는 사역장로는 "노회가 정한 준비 절차와 지침 사항을 받아들여" 특정 과송 사역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안된 개정은 “이는 ... 충분한 이해와 적용을 포함한다”고 확대하고 있다. 기대치를 설정하고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이 166개 노회의 책임이라면, (1) 전권위원회 목사들이 노회 경계를 넘어 사역하기가 계속 어려울 것이며 (2) 고위 안수 포트폴리오 평가가 불평등을 영속화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평가 과정에 편애와 편견이 스며들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형식화된 학습과 통일된 교단 고시 과정이 예배의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안전장치는 선의는 있으나 준비가 부족한 목회 지도자들로부터 개체교회를 보호하고,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 성적 지향(등)이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준비 과정이 가려질 수 있는 취약한 사역 장로들을 보호한다.

자문 - 인종 형평성 옹호 위원회(REAC)

평가 기준 제공

REAC는 총회가 다음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G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될 텍스트는 [대괄호 안에 밑줄]로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석사 학위 수준이 아니더라도 학업을 마치고 장로교 정치, 개혁주의 예배와 성례전, 개혁주의 신학, 구약과 신약 성경 해석, 설교, 기독교 교육, 목회적 돌봄에 대한 유능한 이해와 적용을 입증하는 것이 포함된다. [노회는 이러한 훈련이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인종/민족 및 이민자 공동체 출신 후보생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편향을 인지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노회 전반에 걸쳐 더욱 일관된 준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형평성에 대한 명확한 고려가 없다면, 훈련은 지배적인 문화적 가정을 계속 반영하여 일부 후보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준비 및 지도 접근성의 차이 또한 불균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신학 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F를 포함한 항목 ORD-07을 50/9로 논평과 함께 승인했다. 제227차 총회(2026)는 F를 포함한 항목 ORD-07을 389/84로 승인했다.

ORD-07 전체 보고서와 <안수의 신학과 실천을 탐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전체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8/business>

26-O — G-2.1002

G-2.10 사역 장로를 특정 목회 사역에 파송함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RAC-04 4c)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

G-2.1001 에 따라 섬기고자 하는 사역장로는 노회가 정한 준비 절차와 지침 사항을 받아들여 특정 파송 사역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준비과정에는 성적 비행 주체가 포함된 경계 교육, ~~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과 인종차별 반대 교육**의 이수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수료증은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해서 승인해야 한다. 개인 신앙, 파송 사역에 대한 동기, 노회가 정한 지침 사항과 관련해, 노회는 사역 장로를 심사해야 한다. 특정 사역에 파송되었다가 나중에 사역을 그만 둔 사역 장로는 사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단에 이름을 계속 올릴 수 있으나, G-2.1001에 명시된 직무들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 다만 노회가 이들을 개체교회 또는 사역에 다시 파송하면 이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배경과 근거

모든 장로교인이 부르심을 받은 사역

교회 내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노력이 되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우리 모두가 함께—이전의 충실한 사역에 충실하도록 도전하면서 마무리한다. 그것이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를 드러내고 무너뜨릴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와 각 개체교회, 모든 공의회가 이 일을 지역적으로나 연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교단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

1 제225회 총회 이후, 당회와 중간공의회는 반인종차별 정책을 채택해야 했다. 귀하의 개체교회 또는 중간공의회는 정책을 채택했습니까? 귀하의 노회는 어떤 개체교회가 정책을

채택했고 어떤 개체교회가 채택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습니까(저희는 회의록 감사를 위한 연간 체크리스트에 이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노회는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합니까? 귀하의 당회 또는 중간공의회는 정책을 매년 감사하고 여러분이 함께 그 정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논의합니까? 규례서에 있는 이 요구 사항은 단순히 우리 공의회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참여를 위한 초대이다.

총회 대표성 위원회(GACOR)의 권고

총회 대표성 위원회는 본 기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언어의 참여를 포함하여 향후 총회를 위한 제안된 변경 사항을 비롯해 이 최종 보고서의 전반적인 권고 사항을 지지한다. 교회의 다양성 속의 일치는 예배 예배, 공의회, 그리고 친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에 반영된다.

권고 사항 4항과 5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종차별 반대 훈련이나 교육은 BIPOC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인종차별의 시스템과 구조를 다루는 데 필요한 첫걸음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를 준비하고, 개체교회를 위해,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귀중한 일이다. 역사, 시스템적 영향, 그리고 상호 연결된 해악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신학적 기회에 대해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 내 역사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적 교단에게 매우 중요하고 충실한 일이다. 회복 작업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충실한 노력은 미국 장로교인 교회의 현시점에서 중요한 부르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이나 반인종차별에 대한 의무 교육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중간에서 작은 효과 크기를 보이며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명확성이 거의 없는 등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반인종차별 교육을 폭넓게 갖추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공식적인 연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한 형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일하고 규정 준수에 초점을 맞춘 노력에 필요한 작업량을 봉헌할 때, 명확한 연구 결과의 부족은 보고서가 요구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규례서 의무가 옳바르거나 주요한 제도적 수단인지 여부에 대해 최소한 우리에게 봉헌하게 할 수 있다.

총회 대표성 위원회는 잘 개발되고 미묘하며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인종차별 훈련/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이고 적응 가능한 모델이 다음과 같을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 1 이 보고서의 항목 2a와 관련하여 모든 교단의 공의회를 위한 검증되고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반인종차별 훈련 옵션을 포함하여 미국장로교 신앙사역국이 강력한 훈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여기에는 현재 최고의 연구와 공동체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 역동성과 인종 및 교회 역사의 맥락에 적응하며, 기본적인 것을 넘어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 자료를 수집하고 위임하는 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의 역사나 현재 시스템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훈련을 위한 “모범 사례”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근거: 이러한 수준의 견고한 자원 네트워크는 특정 지역의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해 전국 직원과 협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의 전국적인 구조와 중회들이 자원을 확보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련의 명령보다 반인종차별 교육의 빈도, 가용성 및 전반적인 참여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 그리고: 숙련되고 수준 높은 반인종차별 훈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노회에 필요에 따른 보조금을 현금 또는 지원한다.

근거: 필요에 기반한 보조금 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동기나 요구 사항보다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인해 적절하고 유용한 반인종차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역량이 저해될 수 있는 중회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보다 집중적인 노력(또는 준비)을 통해 명확하고 고품질의 반인종차별 교육 옵션 개발과 교육의 장기적인 이행에 적절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로를 요구하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 이는 광범위한 의무 교육이 가까운 미래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 지속적인 장애물을 유용하게 강조하고, 고품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하며, 더 명확한 원하는 결과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중한 전략은 특별위원회 권고안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작업을 희석시키거나 해로운 지연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깊은 효과성, 충실함,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바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특별위원회의 사역, 자원, 그리고 초대에 대한 깊은 확신과 지지의 정신으로 이 피드백과 대안적 가능성들을 제공한다 – 동시에 우리는 총회로부터 우리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한 협력과 분별을 구한다. 그 목표는 미국장로교 내에서 해방적 행동과 회복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형성이며, 이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다양성 속의 일치가 우리의 공동 생활에서 더욱더 반영될 것이다.

조언 – 여성 및 성 정의 옹호 위원회(ACWGJ)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서 RAC-04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위원회는 총회가 이 결의안을 승인하고, 지도부와 회중 생활 전반에 걸쳐 반인종차별 정책의 채택과 관심에 관해 모든 개체교회에 제기하는 강력한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할 것을 권고한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헌법 자문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작업을 검토하고, 특별위원회의 권고에서 제기된 헌법적 문제에 관해 자문했다. 이러한 논의의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헌법에 부합하며, 승인을 권고한다.

협력

헌법 자문위원회는 또한 다른 안건에서 교육 및 훈련 요건의 변경 또는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규례서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총회 인증 정의 위원회는 RAC-04 4c 59/0 안건을 승인했으며, 제227차 총회(2026)는 RAC-04 4c, 448/26 안건을 승인했다.

RAC-04 전체 보고서와 「미국장로교와 인증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전체 보고서는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9/busin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P — G-2.1002

G-2.10 사역 장로를 특정 목회 사역에 파송함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

G-2.1001 에 따라 섬기고자 하는 사역장로는 노회가 정한 준비 절차와 지침 사항을 받아들여 특정 파송 사역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준비과정에는 성적 비행 주제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수료증은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파송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성적 비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 및 청소년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수료증을 노회에 제출해야 하며,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승인할 교육 과정을 결정한다. 개인 신앙, 파송 사역에 대한 동기, 노회가 정한 지침 사항과 관련해, 노회는 사역 장로를 심사해야 한다. 특정 사역에 파송되었다가 나중에 사역을 그만 둔 사역 장로는 사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단에 이름을 계속 올릴 수 있으나, G-2.1001에 명시된 직무들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 다만 노회가 이들을 개체교회 또는 사역에 다시 파송하면 이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배경과 근거

훈련 요건을 규례서에 추가할 당시 삽입된 문구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아 그 의미가 모호해졌다. 현재의 문구만으로는 경계 교육(boundary training)을 36개월마다 재인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6개월이라는 기간이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훈련에 관한 문구가 정책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다. 즉,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training)”과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을 위한 보호 정책(child, youth, and adults with vulnerabilities protection policy)” 사이에 차이가 있다.

요건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삽입되기도 했다. 훈련 요건을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는 취지였지만, 일부 경우에는 해당 문구의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권위원회 사역 장로(및 전권위원회 준비 중인 자)의 경우, 해당 문구의 위치는 적절하지만, 문구 자체는 “그러한 준비에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무의미하다. 인증서 자체가 “준비”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안된 개정안은 훈련 요건에 관한 문구를 수정하여 모호성을 없애고,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례서의 관련 조항에 문구를 보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이 헌의안은 성 관련 위법행위 및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위한 학대 예방 교육 요건의 규례서 내 배치 및 문구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취하는 개정안을 제안하며, G-2.0603 (지망생 및 후보생), G-2.1002 (위임받은 사역 장로), G-2.1103 (인증된 기독교 교육사), G-3.0106 (공의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당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교육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두 섹션을 추가했는데, 이는 포함될 것으로 가정되었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헌법자문위원회는 규례서를 재편성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주제별 제목과 더 잘 일치시키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가치 있는 노력이라고 조언합니다. 번호가 매겨진 섹션에 대한 수많은 상호 참조 때문에 해당 참조도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2.0104b, G-2.0505, G-2.0610를 참조하라 (본문내 상호참조).

2.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규례서의 현행 문구는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을 요구한다. (예: G-2.1002). 제안된 개정안은 대신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제안된 문구는 성적 학대보다 그 범위가 더 넓으므로, 변경을 하는 경우 총회는 그 의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협력

ACC는 다른 헌의안이 본 항목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훈련 요건에 대한 변경 또는 재조직을 제안하고 있으며 조정이 필요할 것임을 총회에 알린다.

조언 – 여성 및 성 정의 옹호 위원회(ACWGJ)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서 RAC-04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안전, 책임, 돌봄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헌신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하고 사려 깊은 노력으로 이 헌의안을 지지한다. 경계 및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이 조치는 여성, 아동 및 기타 피해 위험에 처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하는 일관된 관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이

사역이 교회의 삶 전체에 걸쳐 신뢰, 진실성, 정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확인한다.

헌법 해석 위원회는 안건 CON-09를 41대 7로 승인했습니다. 제227회 총회(2026)는 안건 CON-09를 465대 4로 승인했다.

안건 MC-06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080/business>를 보라.

26-Q — G-2.1002

G-2.10 사역 장로를 특정 목회 사역에 파송함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ORD-07 H)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

G-2.1001 에 따라 섬기고자 하는 사역장로는 노회가 정한 준비 절차와 지침 사항을 받아들여 특정 파송 사역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준비과정에는 성적 비행 주제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수료증은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해서 승인해야 한다. **노회는 사역 장로인 공인 기독교 교육사가 G-2.1002 및 G-2.1004에 따라서 심사 및 전권위원회되는 경우, 전권위원회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인 신앙, 파송 사역에 대한 동기, 노회가 정한 지침 사항과 관련해, 노회는 사역 장로를 심사해야 한다. 특정 사역에 파송되었다가 나중에 사역을 그만 둔 사역 장로는 사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단에 이름을 계속 올릴 수 있으나, G-2.1001에 명시된 직무들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 다만 노회가 이들을 개체교회 또는 사역에 다시 파송하면 이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배경과 근거

사역 장로인 공인 기독교 교육사들은 전권위원회 목사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신학적, 실제적 준비의 엄격한 과정을 이미 완료했다. 이들의 인증서는 성경 해석, 개혁 신학 및 정치, 예배와 성례전, 교육 리더십, 목회적 돌봄—G-2.1002에 개요된 기본 요건을 반영하는 분야—에서 입증된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준비를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교과 과정의 중복을 피하면서 훈련의 온전함과 깊이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또한 교단 전반의 리더십 요구를 충족하는 데 유연성을 증진하며, 특히 목회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더욱 그러한다. 또한, 이 조항은 미국장로교가 관장하는 전국적으로 인정된 인증 절차를 인정함으로써 교단의 기준을 존중하며, 책임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 교회는 사역 장로인 공인 기독교 교육사가 전권위원회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은사를 인정하고, 리더십 경로의 형평성을 지원하며, 신학적 또는 목회적 온전함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선교와 목회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관행상 많은 공인 기독교 교육사들이 자신이 섬기는 개체교회의 회원이 아니므로 해당 상황에서 사역 장로로 봉사할 자격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별 프로젝트 팀 권고안 J는 현재 미국장로교의 정치 체제에 존재하지 않는 경로를 제안한다. 이 제안된 개정은 기존의 직제 사역과 노회 권한 체계 내에서 명확하고 책임감 있으며 질서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헌법자문위원회는 제 227회 총회에 G-2.1002(훈련, 고시와 전권위원회)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헌법적 고려 사항을 제기한다고 자문한다.

노회는 사역 장로인 공인 기독교 교육사가 G-2.1002 및 G-2.1004에 따라서 심사 및 전권위원회되는 경우, 전권위원회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헌법은 이미 목회 사역에 파송될 치리 장로에 대해 요구되는 훈련과 준비를 결정할 권한을 노회에 부여하고 있다. G-2.1002는 노회가 사역 장로의 직무 수행을 준비하는 훈련을 수립하고 승인하며, 전권위원회 전에 이들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책임은 이미 노회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제안된 문구는 헌법적 권한 배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노회가 훈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인정할 수 있는 준비의 구체적인 예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헌법 본문에 특정 자격을 삽입하는 것이 현재 노회에 부여된 유연성을 의도치 않게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운영 체제는 특정 프로그램, 인증서 또는 교육과정을 나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피하고, 대신 원칙을 확립하고 적절한 준비의 결정은 노회에 맡긴다. 이 사건, 노회는 전권위원회 후보를 평가할 때 이전의 신학적 또는 교육적 준비를 인정할 재량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총회는 또한 헌법에 특정 인증서 프로그램을 명시하는 것이 노회가 각자의 상황에 적합하거나 동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준비 과정의 지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 G-2.1002의 현행 문구는 노회들이 헌법 개정 없이 훈련 요건을 지역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은 사역 장로가 G-2.1001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여전히 노회에서 심사를 받고 특정 목회에 파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노회의 고시, 임명, 감독 책임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따라서 헌법자문위원회는 제안된 개정이 헌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조언하지만, 총회는 G-2.1002에 따라 이미 노회에 봉헌된 재량권을 고려할 때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학 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H를 포함한 항목 ORD-07을 50/9로 논평과 함께 승인했다.
제227차 총회(2026)는 F를 포함한 항목 ORD-07을 50/9로 승인했다. 제 227회 총회(2026년)는
H.389/84를 포함한 안건 ORD-07을 승인했다.

ORD-07 전체 보고서와 <안수의 신학과 실천을 탐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전체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8/business>

26-R — G-2.1101

G-2.11 교회 인증 사역

G-2.1101 교회 인증 사역의 형태 (RAC - 04 4d)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1101 공인된 교회 예배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1101 공인 교회 사역의 형태

사람들은 개체교회, 공의회, 교회 산하 조직체에서 사역하도록 인증받고 청빙받아 직원으로 섬길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애써야 하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 소속 당회와 노회는 총회가 승인한 교단 인증 조직의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이를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교단 인증 조직을 통해 인증을 받은 이들의 명단을 총회의 해당 조직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직은 그 명단을 각 사람들이 속해 있는 노회의 정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체교회, 공의회 및 교회 관련 기관에서 사역하도록 인증받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직원 직책을 맡아 사역하는 사람은 인증 기관과 노회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훈련과 계속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G-3.0106).

배경과 근거

미국장로교와 인종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수십 년에 걸쳐 “미국장로교와 그 통치 문서에 백인 우월주의가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탐구하고 폭로하며 권고안을 제시하는”[1] 수많은 단체 중 하나이다. 이 징계 심판 청구가 정확히 그러한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 교단과 지역 및 국가적 경험 속에서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코커스, 내부 평가, 총회 대의원과 지도자, 교단 직원, 마태복음 25장 운동, 워싱턴 사무소, 그리고 많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말이다. 점진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로교는 아직 급진적으로 포괄성 있고 사랑받는 공동체,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깝게 닮은 예수 따르는 자들의 신실한 운동으로 변화되지 못했다.

우리의 전신인 인종차별 진실과 화해 특별위원회는 미국장로교의 패턴을 인정했다. “소규모 그룹을 동원하여 ‘인종차별을 해결’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축하한 다음,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질 때까지 즉각적인 제도적 망각이 뒤따랐다. 인종 정의에 대한 이전 약속 중 미완성된 과제가 남아 있다.” 종종 RGJ-12에 포함된 제225회 총회(2022)의 미국장로교와 인종에 관한 특별 위원회에 대한 징계 심판 청구는 유색인종에게 이러한 작업과 관심의 순환이라는 부담을 지워 왔다. 우리는 이 순환을 한탄하면서도, 이 일이 끈기 있고 긴급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장로교의 모든 수준에서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에 대처하는 더 완전한 방법을 갖는 데 있어 한 가지 이의 제기는 과거의 모든 인종 정의 정책, 권고, 프로그램, 프로젝트, 템플릿 및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인종 정의와 관련된 총회 활동을 우리의 진전과 실패를 볼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한곳에 모아 놓은 곳은 없다. 우리가 이론 진전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백인 우월주의를 근절하는 데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원만으로는 우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문화를 해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 땅의 탈식민화 역사와 경험 전체와 더불어, 미국 내 장로교인들은 백인 우월주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가 모두 헤엄치는 물이자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이다. 크로스로드 반인종주의 조직과 교육(Crossroads Antiracism Organizing and Training)은 이러한 문화를 우리와 우리의 기관, 그리고 사회 구조가 모두 기능하는 “별집”으로 묘사하며 최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속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은 바로 우리 앞에 있으며, 우리 모두 안에 있다. 깊이 뿌리내린 지배 시스템은 불평등을 영속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형성한다. 진정한 인종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믿도록 훈련받아 왔으며, 종종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명명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2]

우리의 출발점은 이것이다. 우리는 모두 독특하게 미국적이고 만연한 백인 우월주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짓지 않았을 수도 있고, 깊이 반대할 수도 있다.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정의, 포용의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 문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이다. 우리 모두는 이를 보고, 이해하고, 인정하여 해체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근거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장로교인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일련의 질문을 포함했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헌법 자문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작업을 검토하고, 특별위원회의 권고에서 제기된 헌법적 문제에 관해 자문했다. 이러한 논의의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헌법에 부합하며, 승인을 권고한다.

협력

헌법 자문위원회는 또한 다른 안전에서 교육 및 훈련 요건의 변경 또는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규례서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총회 인증정의 위원회는 4d를 포함한 RAC 04 항목을 59대 0으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년)는 4d를 포함한 안전 RAC-04를 승인했다(448/26).

안전 ROD-04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083/business>를 보십시오.

26-S — G-2.1103

G-2.11 교회 인증 사역

G-2.1103 기독교 교육사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1103 기독교 교육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1103 기독교 교육사

a. 기술 및 훈련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개체교회나 공의회 of 교육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인증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성경 해석, 개혁 신학, 예배와 성례전, 인간 발달, 신앙 성장, 종교 교육 이론과 실행, 미국장로교 정책, 프로그램, 사명에 대한 기술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성적 비행 주제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 수료증은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b. 노회의 책임

노회는 공인 기독교 교육사, 공인 기독교 준교육사의 급여와 혜택에 관한 최저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사역을 감독하는 노회의 관련 부서와 이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G-3.0307). 노회 관할권 하에서 교육 사역을 하는 임기 중에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공인 기독교 교육사가 사역 장로이면, 노회의 모든 회의에서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다. ~~공인 기독교 교육자와 공인된 기독교 준교육자는 성적 비행 주제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이수 수료증을 소속 노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수료증은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인 기독교 교육자와 공인 준기독교 교육자는 성적 비행을 주제로 포함하는 경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이수증을 자신이 사역하는 노회에 제출해야 하며,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노회는 이 두 훈련 과정 수료 증명서를 국가 인증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배경과 근거

훈련 요건을 규례서에 추가할 당시 삽입된 문구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아 그 의미가 모호해졌다. 현재의 문구만으로는 경계 교육(boundary training)을 36개월마다 재인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6개월이라는 기간이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훈련에 관한 문구가 정책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다. 즉,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training)”과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을 위한 보호 정책(child, youth, and adults with vulnerabilities protection policy)” 사이에 차이가 있다.

요건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삽입되기도 했다. 훈련 요건을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는 취지였지만, 일부 경우에는 해당 문구의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증된 교회 예배의 경우, 해당 문구가 두 번 삽입되었다. 이 요건이 “기술 및 훈련” 섹션에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G-2.1103의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노회 책임” 섹션에만 해당된다.

제안된 개정안은 훈련 요건에 관한 문구를 수정하여 모호성을 없애고,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례서의 관련 조항에 문구를 보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1. 인증서 및 재인증

제안된 개정안은 훈련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과 36개월 후 반복되는 방식을 변경한다. 지망생 및 후보생, 파송 사역 장로, 공인 기독교 교육사의 사건의 경우, 현행 규례서 문구는 수료 "인증서"와 36개월마다 "재인증"을 요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G-3.0106(모든 공의회에 적용됨)은 36개월마다 교육을 요구하지만, 인증서나 재인증을 요구하지는 않다. 제안된 개정안은 모든 사건에 인증서 및 재인증을 요구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당회의 훈련이 규례서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나 교회의 다른 교회 공의회가 인증서 및 그러한 인증서에 대한 표준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규례서에 있는 기존의 인증서 언어에도 동일한 모호성이 있지만, 제안된 개정안은 그 모호성을 더한다.

제 227회 총회가 항목 __-__의 인증서 및 재인증 요구 의도가 모든 경우에 적절하다고 믿는다면, ACC는 인증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관의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제안된 언어가 그 의도와 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규례서의 현행 문구는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을 요구한다. (예: G-2.1002). 제안된 개정은 대신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 학대 예방 교육”을 언급한다. 제안된 문구는 성적 학대보다 더 광범위하며,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총회는 그 의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언 - 여성 및 성 정의 옹호 위원회(ACWGJ)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서 RAC-04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안전, 책임, 돌봄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헌신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하고 사려 깊은 노력으로 이 헌의안을 지지한다. 경계 및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이 조치는 여성, 아동 및 기타 피해 위험에 처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하는 일관된 관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이 사역이 교회의 삶 전체에 걸쳐 신뢰, 진실성, 정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확인한다.

권고 - 성소수자 형평성 옹호 위원회(ACQ+E)에서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서 RAC-04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성적 비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계 설정 교육과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헌법 해석에 관한 총회 위원회는 동의안 CON-09를 41대 7로 승인하였다. 제227회 총회(2026)는 CON-09를 465대 4로 승인했다.

안전 MC-06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080/business>를 보라.

26-T — G-3.0106

G-3.01 공의회 일반 원칙

G-3.0106 사명의 수행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3.0106 사명의 수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3.0106 사명의 수행

교회가 사역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형태와 구조는 사명에 의해 결정된다. 수행은 공의회가 그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사명의 수행을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에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증거할 수 있다.

당회 위의 공의회는 정책과 절차 실례를 모아 참고 자료집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실례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실행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실행은 공의회의 재량이다. 또한 이와 같은 참고 자료집은 특정 공의회의 사역을 향상시키거나 견고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 공의회는 해당 공의회 사역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그 사역을 이끌어갈 사명 수행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모든 공의회들은 다음의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성적 비행 정책, 괴롭힘 관련 정책, 유소년 보호 정책, 반인종차별 정책. 각 공의회의 정책에는 경계 교육과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이 필수 요구 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경계 교육에는 성적 비행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은 최소한 36개월마다 재인증되어야 한다.

대회와 노회의 반인종차별 정책에는, 교역장로, 파송 사역장로 및 회중, 공의회, 교회 관련 기관에서 섬기도록 인증받고 부름받아 직원으로 일하는 이들, 그리고 해당 관할권 하에 있는 지원자와 후보생을 대상으로 36개월에 한 번 이상 실시하는 필수 교육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신실한 지도력과 책무성, 그리고 교회가 공공신학과 윤리적 지도력에 대해 지니는 헌신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교육에는 측정 가능한 성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의회는 그 임무의 일부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체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조직체가 해당 공의회의 책임 하에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공의회는 서로 책임, 권리, 권한을 공유하고 있기에, 사명의 수행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성이 드러난다(F- 3.0203). 하위 공의회는 그 구성원이나 대의원을 파견하여 상위 공의회 사역의 기획과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명, 예산, 직원 관리, 평등 고용, 공정한 보수 같은 사안과 관련해 조직 간의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조달 역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교회의 어느 부분이라도 전체 교회 사명의 청지기직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체 교회의 하나됨과 상호의존성을 손상하는 것이다. 사명의 수행을 위한 기금을 사용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에 효율적으로 증거해야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당회 위의 각 공의회는 행정 직원 경비를 포함, 운영 경비 관련 예산을 준비해 채택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그 산하 개별 교회들이 낸 상회비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상회비를 건어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해당 대회와 총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노회는 그 산하 교회의 당회에 상회비 분담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상회비를 결정하는 당회의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

배경과 근거

미국장로교와 인종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수십 년에 걸쳐 “미국장로교와 그 통치 문서에 백인 우월주의가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탐구하고 폭로하며 권고안을 제시하는”[1] 수많은 단체 중 하나이다. 이 징계 심판 청구가 정확히 그러한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 교단과 지역 및 국가적 경험 속에서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코커스, 내부 평가, 총회 대의원과 지도자, 교단 직원, 마태복음 25장 운동, 워싱턴 사무소, 그리고 많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말이다. 점진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로교는 아직 급진적으로 포괄성 있고 사랑받는 공동체,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깝게 닮은 예수 따르는 자들의 신실한 운동으로 변화되지 못했다.

우리의 전신인 인종차별 진실과 화해 특별위원회는 미국장로교의 패턴을 인정했다. “소규모 그룹을 동원하여 ‘인종차별을 해결’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축하한 다음,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질 때까지 즉각적인 제도적 망각이 뒤따랐다. 인종 정의에 대한 이전 약속 중 미완성된 과제가 남아 있다.” 종종 RGJ-12에 포함된 제225회 총회(2022)의 미국장로교와 인종에 관한 특별 위원회에 대한 징계 심판 청구는 유색인종에게 이러한 작업과 관심의 순환이라는 부담을 지워 왔다. 우리는 이 순환을 한탄하면서도, 이 일이 끈기 있고 긴급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장로교의 모든 수준에서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에 대처하는 더 완전한 방법을 갖는 데 있어 한 가지 이의 제기는 과거의 모든 인종 정의 정책, 권고, 프로그램, 프로젝트, 템플릿 및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인종 정의와 관련된 총회 활동을 우리의 진전과 실패를 볼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한곳에 모아 놓은 곳은 없다. 우리가 이론 진전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백인 우월주의를 근절하는 데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원만으로는 우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문화를 해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 땅의 탈식민화 역사와 경험 전체와 더불어, 미국 내 장로교인들은 백인 우월주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가 모두 헤엄치는 물이자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이다. 크로스로드 반인종주의 조직과 교육(Crossroads Antiracism Organizing and Training)은 이러한 문화를 우리와 우리의 기관, 그리고 사회 구조가 모두 기능하는 “별집”으로 묘사하며 최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속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은 바로 우리 앞에 있으며, 우리 모두 안에 있다. 깊이 뿌리내린 지배 시스템은 불평등을 영속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형성한다. 진정한 인종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믿도록 훈련받아 왔으며, 종종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명명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2]

우리의 출발점은 이것이다. 우리는 모두 독특하게 미국적이고 만연한 백인 우월주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짓지 않았을 수도 있고, 깊이 반대할 수도 있다.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정의, 포용의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 문화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이다. 우리 모두는 이를 보고, 이해하고, 인정하여 해체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근거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장로교인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일련의 질문을 포함했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헌법 자문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작업을 검토하고, 특별위원회의 권고에서 제기된 헌법적 문제에 관해 자문했다. 이러한 논의의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헌법에 부합하며, 승인을 권고한다.

협력

헌법 자문위원회는 또한 다른 안건에서 교육 및 훈련 요건의 변경 또는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규례서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총회 대표성 위원회(GACOR)의 권고

총회 대표성 위원회는 본 기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언어의 참여를 포함하여 향후 총회를 위한 제안된 변경 사항을 비롯해 이 최종 보고서의 전반적인 권고 사항을 지지한다. 교회의 다양성 속의 일치는 예배 예배, 공의회, 그리고 친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에 반영된다.

권고 사항 4항과 5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종차별 반대 훈련이나 교육은 BIPOC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인종차별의 시스템과 구조를 다루는 데 필요한 첫걸음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를 준비하고, 개체교회를 위해,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귀중한 일이다. 역사, 시스템적 영향, 그리고 상호 연결된 해악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신학적 기회에 대해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 내 역사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적 교단에게 매우 중요하고 충실한 일이다. 회복 작업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충실한 노력은 미국 장로교인 교회의 현시점에서 중요한 부르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이나 반인종차별에 대한 의무 교육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중간에서 작은 효과 크기를 보이며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명확성이 거의 없는 등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반인종차별 교육을 폭넓게 갖추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공식적인 연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한 형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일하고 규정 준수에 초점을 맞춘 노력에 필요한 작업량을 봉헌할 때, 명확한 연구 결과의 부족은 보고서가 요구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규제서 의무가 올바르게 주요한 제도적 수단인지 여부에 대해 최소한 우리에게 봉헌하게 할 수 있다.

총회 대표성 위원회는 잘 개발되고 미묘하며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인종차별 훈련/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이고 적응 가능한 모델이 다음과 같을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 2 이 보고서의 항목 2a와 관련하여 모든 교단의 공의회를 위한 검증되고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반인종차별 훈련 옵션을 포함하여 미국장로교 신앙사역국이 강력한 훈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여기에는 현재 최고의 연구와 공동체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 역동성과 인종 및 교회 역사의 맥락에 적응하며, 기본적인 것을 넘어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 자료를 수집하고 위임하는 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의 역사나 현재 시스템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훈련을 위한 “모범 사례”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근거: 이러한 수준의 견고한 자원 네트워크는 특정 지역의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해 전국 직원과 협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의 전국적인 구조와 중회들이 자원을 확보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련의 명령보다 반인종차별 교육의 빈도, 가용성 및 전반적인 참여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3. 그리고: 숙련되고 수준 높은 반인종차별 훈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노회에 필요에 따른 보조금을 현금 또는 지원한다.

근거: 필요에 기반한 보조금 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동기나 요구 사항보다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인해 적절하고 유용한 반인종차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역량이 저해될 수 있는 중회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보다 집중적인 노력(또는 준비)을 통해 명확하고 고품질의 반인종차별 교육 옵션 개발과 교육의 장기적인 이행에 적절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로를 요구하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 이는 광범위한 의무 교육이 가까운 미래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 지속적인 장애물을 유용하게 강조하고, 고품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하며, 더 명확한 원하는 결과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중한 전략은 특별위원회 권고안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작업을 희석시키거나 해로운 지연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깊은 효과성, 충실함,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바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특별위원회의 사역, 자원, 그리고 초대에 대한 깊은 확신과 지지의 정신으로 이 피드백과 대안적 가능성들을 제공한다 - 동시에 우리는 총회로부터 우리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한 협력과 분별을 구한다. 그 목표는 미국장로교 내에서 해방적 행동과 회복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형성이며, 이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다양성 속의 일치가 우리의 공동 생활에서 더욱더 반영될 것이다.

조언 - 여성 및 성 정의 옹호 위원회(ACWGJ)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서 RAC-04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위원회는 총회가 이 결의안을 승인하고, 지도부와 회중 생활 전반에 걸쳐 반인종차별 정책의 채택과 관심에 관해 모든 개체교회에 제기하는 강력한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할 것을 권고한다.

인종 정의에 관한 총회 위원회는 RAC-04 4a 항목을 59대 0으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는 RAC-04 4a 항목을 448대 26으로 승인했다.

RAC-04 전체 보고서와 「미국장로교와 인종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전체 보고서는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129/busin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U — G-3.0106

G-3.01 공의회 일반 원칙

G-3.0106 사명의 수행(CON-09)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3.0106 사명의 수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3.0106 사명의 수행

교회가 사역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형태와 구조는 사명에 의해 결정된다. 수행은 공의회가 그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사명의 수행을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에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증거할 수 있다.

당회 위의 공의회는 정책과 절차 실례를 모아 참고 자료집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실례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실행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실행은 공의회의 재량이다. 또한 이와 같은 참고 자료집은 특정 공의회의 사역을 향상시키거나 견고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 공의회는 해당 공의회 사역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그 사역을 이끌어갈 사명 수행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모든 공의회들은 다음의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최소 36개월마다 한 번씩 경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요건이 포함된 성적 비행 정책, 괴롭힘 관련 정책, 유소년 보호 정책, 최소 36개월마다 한 번씩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요건이 포함된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 방지에 관한 정책, 괴롭힘 방지 정책, 반인종차별 정책. 여기에 열거된 정책은 최소 요구 사항이며, 공의회 운영 지침서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을 모두 망라한 목록은 아니다.** 각 공의회의 정책에는 성적 비행을 포함하는 경계 훈련과 아동 성적 학대 예방 훈련에 대한 요구 사항이 최소 36개월마다 회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공의회는 그 임무의 일부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체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조직체가 해당 공의회의 책임 하에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공의회는 서로 책임, 권리, 권한을 공유하고 있기에, 사명의 수행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성이 드러난다(F- 3.0203). 하위 공의회는 그 구성원이나 대의원을 파견하여 상위 공의회 사역의 기획과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명, 예산, 직원 관리, 평등 고용, 공정한 보수 같은 사안과 관련해 조직 간의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조달 역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교회의 어느 부분이라도 전체 교회 사명의 청지기직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체 교회의 하나됨과 상호의존성을 손상하는 것이다. 사명의 수행을 위한 기금을 사용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에 효율적으로 증거해야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당회 위의 각 공의회는 행정 직원 경비를 포함, 운영 경비 관련 예산을 준비해 채택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그 산하 개별 교회들이 낸 상회비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상회비를 걷어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해당 대회와 총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노회는 그 산하 교회의 당회에 상회비 분담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상회비를 결정하는 당회의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

배경과 근거

훈련 요건을 규례서에 추가할 당시 삽입된 문구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아 그 의미가 모호해졌다. 현재의 문구만으로는 경계 교육(boundary training)을 36개월마다 재인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6개월이라는 기간이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훈련에 관한 문구가 정책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다. 즉,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training)”과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을 위한 보호 정책(child, youth, and adults with vulnerabilities protection policy)”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삽입되기도 했다. 훈련 요건을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는 취지였지만, 일부 경우에는 해당 문구의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의회의 경우, 삽입된 문구는 “모든 공의회 회원”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지만 — 중간공의회의 경우, 정의상 “회원”에는 대규모 인원, 즉 노회 내의 개체교회와 대회 내의 노회가 포함된다. 만약 한 개체교회가 공의회 회원이라면, 이 요건은 개체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훈련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개체교회의 선출된 대의원이 공의회에서 개체교회를 대표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을 낳은 헌의안의 의도는 결코 그것이 아니었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의회 회원”이 노회와 대회 행정전권위원회 회원들에게 적용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들은 규례서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교회 공의회”로 정의하기 전에는 종종 “공의회”라고 불렸다. 일부 중간공의회는 공의회라는 명칭을 변경했지만, 다른 중간공의회는 여전히 그러한 행정전권위원회에 공의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G-3.0106에 제안된 문구는 중간공의회를 위한 그러한 기관의

일반적인 정의를 확립하고 그 회원들이 훈련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G-3.0201에 삽입된 내용은 당회 회원들이 훈련을 받도록 요구한다.

제안된 개정안은 훈련 요건에 관한 문구를 수정하여 모호성을 없애고,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례서의 관련 조항에 문구를 보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협력

ACC는 다른 헌의안이 본 항목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훈련 요건에 대한 변경 또는 재조직을 제안하고 있으며 조정이 필요할 것임을 총회에 알린다.

조언 – 여성 및 성 정의 옹호 위원회(ACWGJ)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서 RAC-04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안전, 책임, 돌봄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헌신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하고 사려 깊은 노력으로 이 헌의안을 지지한다. 경계 및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이 조치는 여성, 아동 및 기타 피해 위험에 처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하는 일관된 관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이 사역이 교회의 삶 전체에 걸쳐 신뢰, 진실성, 정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확인한다.

권고 - 성소수자 형평성 옹호 위원회(ACQ+E)에서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서 RAC-04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성적 비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계 설정 교육과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헌법 해석에 관한 총회 위원회는 CON-09를 41대 7로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는 CON-09를 465대 4로 승인했다.

안건 MC-06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080/business>를 보라.

26-V — G-3.0206

G-3.02 당회

G-3.0206 교육 (CON-09)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3.0206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3.0206 교육

당회의 모든 구성원은 성적 비행을 포함한 경계 설정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 및 청소년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이러한 교육의 이수 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교육은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해서 승인해야 한다.

배경과 근거

훈련 요건을 규례서에 추가할 당시 삽입된 문구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아 그 의미가 모호해졌다. 현재의 문구만으로는 경계 교육(boundary training)을 36개월마다 재인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6개월이라는 기간이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훈련에 관한 문구가 정책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다. 즉,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training)”과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을 위한 보호 정책(child, youth, and adults with vulnerabilities protection policy)” 사이에 차이가 있다.

요건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삽입되기도 했다. 훈련 요건을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는 취지였지만, 일부 경우에는 해당 문구의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공의회의 경우, 삽입된 문구는 “모든 공의회 회원”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지만 — 중간공의회의 경우, 정의상 “회원”에는 대규모 인원, 즉 노회 내의 개체교회와 대회 내의 노회가 포함된다. 만약 한 개체교회가 공의회 회원이라면, 이 요건은 개체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훈련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개체교회의 선출된 대의원이 공의회에서 개체교회를 대표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을 낳은 헌의안의 의도는 결코 그것이 아니었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의회 회원”이 노회와 대회 행정전권위원회 회원들에게 적용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들은 규례서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교회 공의회”로 정의하기 전에는 종종 “공의회”라고 불렸다. 일부 중간공의회는 공의회라는 명칭을 변경했지만, 다른 중간공의회는 여전히 그러한 행정전권위원회에 공의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G-3.0106에 제안된 문구는 중간공의회를 위한 그러한 기관의 일반적인 정의를 확립하고 그 회원들이 훈련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G-3.0201에 삽입된 내용은 당회 회원들이 훈련을 받도록 요구한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이 헌의안은 성 관련 위법행위 및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위한 학대 예방 교육 요건의 규례서 내 배치 및 문구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취하는 개정안을 제안하며, G-2.0603 (지망생 및 후보생), G-2.1002 (위임받은 사역 장로), G-2.1103 (인증된 기독교 교육사), G-3.0106 (공의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당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교육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두 섹션을 추가했는데, 이는 포함될 것으로 가정되었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ACC는 또한 당회 훈련 요건을 담은 새로운 G-3.0201d를 만드는 것이 규례서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G-3.0201a - G-3.0201c의 조직은 교회의 표지(F-1.0302)를 따르도록 설계되었다. 하위 섹션 "D"를 추가하는 것은 당회와 관련된 교회의 네 번째 표지가 새로 생겼음을 시사한다. G-3.0206에 새 섹션을 만드는 것이 더 깔끔할 수 있다.

2.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규례서의 현행 문구는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을 요구한다. (예: G-2.1002). 제안된 개정안은 대신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제안된 문구는 성적 학대보다 그 범위가 더 넓으므로, 변경을 하는 경우 총회는 그 의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언 - 여성 및 성 정의 옹호 위원회(ACWGJ)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서 RAC-04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안전, 책임, 돌봄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헌신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하고 사려 깊은 노력으로 이 헌의안을 지지한다. 경계 및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이 조치는 여성, 아동 및 기타 피해 위험에 처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하는 일관된 관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이 사역이 교회의 삶 전체에 걸쳐 신뢰, 진실성, 정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확인한다.

권고 - 성소수자 형평성 옹호 위원회(ACQ+E)에서

여성 및 젠더 정의 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서 RAC-04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성적 비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계 설정 교육과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헌법 해석에 관한 총회 위원회는 동의안 CON-09를 41대 7로 승인하였다. 제227회 총회(2026)는 CON-09를 465대 4로 승인했다.

안전 MC-06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080/business>를 보라.

26-W — G-3.0301

G-3.03 노회

G-3.0301 구성과 책임(ORD-07 E)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3.0301 구성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3.0301 구성과 책임

노회는 특정 지역 내의 교회들의 연합체로 기능하는 공의회로서 그 지역 내의 모든 개체교회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된다. 노회는 각 당회가 노회에 파송할 대의원으로 몇 명의 사역 장로를 선출해야 하는지 계획하고, 이를 당회에 알려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가 될 수 있으면 동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당회가 적어도 한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규모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F-1.0403과 G-3.0103의 참여와 대표성의 원칙을 반영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노회 임원으로 선출된 사역 장로는 그 임기동안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노회는 노회나 노회 산하 개체교회 내에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 동안, 노회는 해당 사역 장로를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G-2.1001에 따라 제한된 목회 사역을 하도록 파송된 사역 장로는 그 파송이 유효한 기간에 한하여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와 같이 파송된 사역장로는 이 조항에 따른 유효한 파송 기간 동안에만 노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노회의 최소 구성 요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열 개의 당회와 열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다. G-3.01과 G-3.03에서 노회에 부여된 책임을 고려하여 해당 대회와 총회가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노회는 그 영역 내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개체교회가 증거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개체교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증거의 공동체로 발전한다. 노회 산하 개체교회의 증거 사역을 이끌어 갈 때, 노회는 교회의 표지(F-1.0302),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를 통해 정립해온 정체성(F-1.0303), 교회의 여섯 가지 궁극적 목표(F-1.0304)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노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목회자가 없는 개체교회를 감독하는 일, 목회 관계를 수립하고 해소하는 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인도하는 일, 노회 영역 내 교회의 삶과 사명을 확장하는 범교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 전도, 리더십 개발, 예배, 복음, 행정의 부문에서 개체교회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 b.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전하고 진행한다.* 노회 회의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미조직 친교모임, 새 개척 교회, 개체교회는 아니지만 노회 영역 내에서 만나고 있는 조직체에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성례전 집전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의 만찬을 집전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역 장로를 승인하고 훈련하는 일, 성례전을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여, 성례전이 갖고 있는 일치의 삶을 노회가 살아가도록 노회의 개체교회와 회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실행하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 e.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육성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인 노회 회원을 안수, 입회, 해임, 위임, 제명, 권징하는 일¹, 평신도 목회자를 제한적인 목회 사역에 파송하는 일, 개체교회의 평화와 조화를 증진하며 개체교회 내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는 일, 개체교회가 관대함, 청지기직, 섬김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일, 개체교회가 사명을 발전시키고 전체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지원하는 일, 해산된 개체교회의 교인에 대한 관할권을 받고 그들의 교인 자격을 다른 개체교회로 옮기는 일, 노회 영역 내에서의 교리적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일, 교회 권징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한다.

배경과 근거

규례서(G-2.1001)는 전권위원회 목사가 개체교회를 섬기도록 전권을 위임받은 동안 노회 내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부여받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전권위원회 목사의 직무 범위를 결정할 노회의 권한을 명확히 확인한다. 이 조항은 미국장로교의 직제 사역, 지역적 분별력과 상황적 유연성에 대한 헌신을 반영한다.

전권위원회 목사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아니지만, 중요한 목회적 책임을 위임받으며 전권위원회 목회를 수행하는 동안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는다. 발언권과 투표권은 전도사들이 교회의 삶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영적 지도자이자 목회의 지역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확인한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7회 총회(2026)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안건 ____-____을 승인할 것을 자문한다.

G-2.1001에 대한 이 제안된 개정안은 전권위원회 목사(전권위원회 사역 장로라고도 함)가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에 위임된 동안 노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을

명시할 것이다. 헌법 자문위원회는 G-2.1001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이 그 목적에 있어서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완성 개정안(perfecting amendment)을 포함하여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이 완성 개정안은 제안된 권한을 G-2.1001에 따른 유효한 파송(active commission) 및 그 기간(term)에 직접 연결하는 문구를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이와 같이 파송된 사역장로는 이 조항에 따른 유효한 파송 기간 동안에만 노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이러한 완벽한 개정의 이유는 G-2.1001에 명시된 "제한된 목회 예배에 전권위원회된" 것이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의 한 형태를 구성하지만,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라는 문구가 "개체교회를 섬기기 위한 전권위원회"보다 별개이거나 더 좁은 범주로 오해될 수 있어 불필요한 논쟁과 불균등한 적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노회 행위로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파송"에 고정하여 언어를 수정함으로써, 이 언어는 의도를 보존하고 오해를 줄이며 일관된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파송된 사역 장로"라는 특정 문구를 사용하여 수정하면 명확한 주어를 제공함으로써 모호한 선행사 "그들"을 피할 수 있다.

협력

총회가 이 개정안을 승인하면, G-3.0301도 규례서의 이 조항과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페이스북에서 ACC의 조언을 참조하라.

자문 - 인종 형평성 옹호 위원회(REAC)

...파송된 사역 장로의 발언권과 투표권

REAC는 총회가 F항의 두 가지 수정안을 모두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REAC는 전권위원회 목사들이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노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 개정안은 전권위원회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노회 운영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인종/민족, 이민자 및 소외된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오랜 불평등을 시정한다.

신학 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E를 포함한 항목 ORD-07을 50/9로 논평과 함께 승인했다. 제227회 총회(2026)는 E를 포함한 항목 ORD-07을 389/84로 승인했다.

ORD-07 전체 보고서와 <안수의 신학과 실천을 탐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전체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yga.pc-biz.org/business/committees?event=3000005&committee=3000128>

26-X — G-3.0301

G-3.03 노회

G-3.0301 구성과 책임(ORD-07 G)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3.0301 구성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3.0301 구성과 책임

노회는 특정 지역 내의 교회들의 연합체로 기능하는 공의회로서 그 지역 내의 모든 개체교회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된다. 노회는 각 당회가 노회에 파송할 대의원으로 몇 명의 사역 장로를 선출해야 하는지 계획하고, 이를 당회에 알려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가 될 수 있으면 동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당회가 적어도 한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규모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F-1.0403과 G-3.0103의 참여와 대표성의 원칙을 반영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노회 임원으로 선출된 사역 장로는 그 임기동안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역 장로가 노회 또는 노회 산하 개체교회 내에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동안, 노회는 해당 사역 장로를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노회의 최소 구성 요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열 개의 당회와 열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다. G-3.01과 G-3.03에서 노회에 부여된 책임을 고려하여 해당 대회와 총회가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노회는 그 영역 내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개체교회가 증거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개체교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증거의 공동체로 발전한다. 노회 산하 개체교회의 증거 사역을 이끌어 갈 때, 노회는 교회의 표지(F-1.0302),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를 통해 정립해온 정체성(F-1.0303), 교회의 여섯 가지 궁극적 목표(F-1.0304)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노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목회자가 없는 개체교회를 감독하는 일, 목회 관계를 수립하고 해소하는 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인도하는 일, 노회 영역 내 교회의 삶과 사명을 확장하는 범교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 전도,

리더십 개발, 예배, 복음, 행정의 부문에서 개체교회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 b.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전하고 진행한다.* 노회 회의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미조직 친교모임, 새 개척 교회, 개체교회는 아니지만 노회 영역 내에서 만나고 있는 조직체에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성례전 집전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의 만찬을 집전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역 장로를 승인하고 훈련하는 일, 성례전을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여, 성례전이 갖고 있는 일치의 삶을 노회가 살아가도록 노회의 개체교회와 회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실행하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 c.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육성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인 노회 회원을 안수, 입회, 해임, 위임, 제명, 권징하는 일, 평신도 목회자를 제한적인 목회 사역에 파송하는 일, 개체교회의 평화와 조화를 증진하며 개체교회 내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는 일, 개체교회가 관대함, 청지기직, 섬김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일, 개체교회가 사명을 발전시키고 전체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지원하는 일, 해산된 개체교회의 교인에 대한 관할권을 받고 그들의 교인 자격을 다른 개체교회로 옮기는 일, 노회 영역 내에서의 교리적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일, 교회 권징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 ***미국장로교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회원 명부와 세례교인 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우리의 포용적인 다양성을 증언하고 이를 양육하는 것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배경과 근거

미국장로교는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공동체에서 성령의 움직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 G-3.0103 및 F-1.040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회의 공의회는 교회 구성원의 풍부한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하고, 의사 결정에 모든 사람이 온전히 참여하며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많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와 이민자 친교회는 신앙과 선교의 활기찬 표현이지만, 종종 전통적인 회중 구조 밖에 존재한다. 그 결과, 그들의 회원들은 세례 및 회원 명부에 포함되고 교회 공의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것을 포함하여 교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격차는 의도치 않게 미국장로교의 삶과 증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공동체들을 소외시킨다.

이 현의안은 G-3.0301(c)를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예배 공동체와 친교회에 속한 개인 중 미국장로교 회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회원 및 세례 명부 조항.

이 공동체 출신 대의원들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보장하여 교회의 분별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이유

교회의 포괄성 약속을 재확인하다

이 개정안은 교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리더십과 대표성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에 부합한다. 선교 공동체가 교회의 미래에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라 중심적인 존재임을 인식한다.

선교적 참여 강화

새로운 예배 공동체와 친교회는 종종 선교 혁신의 최전선에 서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대표되지 않던 사람들과 문화를 포용한다. 노회 생활에 이들을 온전히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의 공동 증언을 강화하고 선교적 정체성을 심화한다.

목회적과 교회적 돌봄 제공

교회는 회원 및 세례 명부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소속감을 확인한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인 개체교회의 회원들과 동일한 목회적 돌봄, 성례전 참여, 교회적 인정을 받도록 보장한다.

운영 내 대표성과 형평성 증진

이 공동체 출신 대의원들에게 발언권과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노회 차원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생활의 전반적인 폭을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이 공동체에 있는 리더십 헌금을 확인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G-3.0301에 대한 이 개정은 더욱 포괄적이고 대표적이며 선교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라는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충실한 응답이다. 이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와 친교회의 공헌을 기리고, 미국장로교 내에서 그 회원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교회 운영과 분별에 그들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식탁이 되라는 부르심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G-3.0301을 개정하는 위원회 권고 G에 대한 ACC 자문.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7회 총회에 안건 - 가 총회가 검토해야 할 다음의 헌법적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음을 자문한다.

이 개정안은 노회 차원에서 두 가지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새로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미국장로교 회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회원 및 세례 기록에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2) 이들 공동체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에게 "발언권과 투표권"을 부여하여 노회 결정에 대표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항목 ORD-07 G는 총회가 고려해야 할 헌법적 명확성과 내부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헌법은 이미 노회에서 인정한 예배 공동체를 위한 틀을 확립하고 있다. G-1.0104에 따라, 후원하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참가자들의 회원 기록을 유지하며, 노회는 예배 공동체와 이를 후원하는 당회 간의 적절한 관계를 결정한다. 제안된 대로, 이 개정안은 G-3.0301(c)에 새로운 노회 책임을 삽입함으로써 기존 체계를 중복시키거나 모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기록 보관 책임을 노회 자체로 이전하거나 회원 또는 세례 명부의 병렬 세트를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제안된 문구인 “새로운 예배 공동체 또는 친교회에서 온 대의원들에게 발언권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헌법 및 운영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규례서에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나 이민자 친교회에서 온 대의원들을 정의하는 내용이 없다. 이러한 정의가 없으면, 이 항목의 효력은 노회가 미국장로교 회원 자격이 없거나 사역 장로로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언권과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개정은 이 대의원들을 누가 선출하는지, 그들이 예배 공동체나 후원 공의회를 대표하는지, 자격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또는 그들이 미국장로교 회원이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은 현재 “예배 공동체”와 후원 공의회(G-1.0104)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 달리 정의되지 않은 “친교회(fellowships)”라는 용어의 포함은 노회 전반에 걸쳐 해석의 차이와 불균등한 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회원과 세례 명부를 제공한다”는 문구는 노회가 후원하는 공의회가 아닐지라도 노회에 그러한 기록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정안이 기록 관리 책임이 적절한 공의회에 있다는 기존 패턴을 의도치 않게 변경하지 않도록 명확화가 필요할 수 있다.

총회가 항목 -의 의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법자문위원회는 (1) 예배 공동체와 후원 공의회 간의 헌법에 명시된 관계를 기록 보관 및 참여의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고, (2) 정의되지 않은 헌법적 대의원 범주 생성을 피함으로써 언어를 더 명확하고 기존 헌법 체계와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발언권과 투표권을 포함한 노회 참여는 기존 헌법 구조 내에서 노회 규칙이나 후원 공의회를 통해 더 명확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편집자 주: 근거와 조언은 총회에 의해 변경된 이전 문구를 기반으로 한다.

신학 교육 및 안수 위원회는 G를 포함한 항목 ORD-07을 50/9로 논평과 함께 승인했다.
제227차 총회(2026)는 G를 포함한 항목 ORD-07을 389/84로 승인했다.

ORD-07 전체 보고서와 <안수의 신학과 실천을 탐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전체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yga.pc-biz.org/business/committees?event=3000005&committee=3000128>

26-Y — G-3.0306

G-3.03 노회

G-3.0306 노회 회원 자격(CON-09)

제 225회 총회(2022)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3.0306 노회 회원 자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3.0306 노회 회원 자격

각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회원 자격을 확인하며 이들이 하려는 사역을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노회는 그 영역 내의 사역 승인을 위해 노회가 개발한 서면 기준을 따라야 한다(G-2.0503a).

노회는 각각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노회 가입 후보자들을 교단의 신학, 성례전, 운영체제 측면에서 그들의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확인해야 한다.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교사, 전도자, 행정가, 기관 목사, 그리고 노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기타 사역 형태에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명된 이들은 노회가 승인한 시간과 장소에서 성례전을 집전할 수 있다.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노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노회는 노회의 지리적 범위 밖에 있거나 노회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은 인증된 사역에 목회자가 참여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노회도 다른 노회의 지리적 범위 내에 있으며 다른 노회의 책임 하에 있는 사역에 목회자가 참여하도록 다른 노회의 동의없이 허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두 노회가 모두 허락해야 하며 매년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

노회의 목사 구성원은 성적 비행을 주제로 포함하는 경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하며,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교육을 결정하며, 재량에 따라 이러한 요건의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미국 밖에 있는 교단에서 사역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 사역 기간 중에 노회의 허락 하에 그 교단의 회원 자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이 교단의 노회 회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경과 근거

훈련 요건을 규례서에 추가할 당시 삽입된 문구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아 그 의미가 모호해졌다. 현재의 문구만으로는 경계 교육(boundary training)을 36개월마다 재인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6개월이라는 기간이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훈련에 관한 문구가 정책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다. 즉,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training)”과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을 위한 보호 정책(child, youth, and adults with vulnerabilities protection policy)” 사이에 차이가 있다.

요건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삽입되기도 했다. 훈련 요건을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는 취지였지만, 일부 경우에는 해당 문구의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에게는 그 요건이 직접 적용된 적이 없었다. “목회” 단계에 요건을 삽입하고 모든 공의회 회원(당회를 주재하는 목사 포함)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이 훈련은 신임 목사와 개체교회를 섬기는 목사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었지만, 이미 안수를 받았으나 현재 다른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예: 군목이나 캠퍼스 목회)를 수행하고 있는 현직 목사들은 제외되었다. 모든 목사 회원에게 이러한 훈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되, 은퇴 목사에게는 이 요건을 면제할 재량권을 노회에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제안된 개정안은 훈련 요건에 관한 문구를 수정하여 모호성을 없애고,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례서의 관련 조항에 문구를 보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자문 — 헌법 자문위원회(ACC)

4. 은퇴 목사

은퇴 목사는 노회 재량에 따라 경계 훈련 및 학대 예방 훈련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제226회 총회(2024년)에서 다음의 권위 있는 해석이 총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G-3.0106은 "성 관련 위법행위와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 (G-3.0106)을 포함하는 것 외에 경계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정의하지 않는다. 노회는 따라서 그러한 추가 요건이 무엇이어서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회는 무능력한 사람에 대한 경계 훈련을 포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나이 그 자체가 무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대안으로, 노회는 목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회 회원들에게만 경계 훈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목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는 노회가 정의한다. (<https://www.pc-biz.org/search/3001325>).

어떤 의미에서, 이 개정은 면제 대상을 "은퇴 목사"로 제한함으로써, 노회 판결에 따라 훈련 면제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회에 이미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좁히다. 이 개정안이 있더라도, 노회는 그 회원들에게 어떤 훈련 요건이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G-3.0101, “[p]owers not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are reserved to the presbyteries.”), 따라서 이 개정은 의미 있는 변화를 추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제 227회 총회가 2024년 권위 있는 해석을 규례서에 성문화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면, ACC는 제안된 언어가 권위 있는 해석의 언어를 더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해서 승인해야 한다. 은퇴 목사로 지정된 분들은 노회의 재량에 따라 이러한 훈련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

헌법 해석에 관한 총회 위원회는 동의안 CON-09를 41대 7로 승인하였다. 제227회 총회(2026)는 CON-09를 465대 4로 승인했다.

안전 MC-06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committee/3000080/business>를 보라.

모든 항목이 승인되면 개정안은 규례서에 다음과 같이 . (삭제된 텍스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다. 추가된 텍스트는 굵게 표시된다.)

F-1.03 교회의 소명

F-1.0305 공적 영역에서의 신실한 증언

교회는 공적 영역에서 신실한 증언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정의와 평화와 자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한다. 교회는 국가 권력을 통하여 기독교를 특권적이거나 지배적인 세력으로 세우려는 이념, 또는 종교적 정체성을 국가적·인종적·민족적 우월주의와 동일시하는 이념을 배격한다. 그러한 이념은 그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에 배치되고, 신학적 오류를 구성하며, 교회의 신실한 증언을 훼손하고, 교회에 반한다

G-2.01 교회의 직제사역

G-2.0102 직제 사역

신약에 서술되어 있으며 본 교단이 유지해온 교회의 직제사역은 집사와 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장로)다. 직제사역은 교회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사역이 풍성해지도록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각 직무는 동등하게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며 갖추어 주시는 방식에 있어 "어느 한 직무가 다른 직무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제2헬베타 신앙고백 5.160, 5.161, 5.162). 이러한 직제사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교회 전체 사역에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교회의 운영은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d.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는 하나님 백성의 권리는 결코 양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체교회나 교단의 공의회가 선출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해당 조직에서 직제사역을 맡을 수 없다.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교역 장로로 부르기도 함)에 대한 안수는 해당 직제 사역에 따라 각기 고유하다.

G-2.0104 은사와 자격

c. 반인종차별 교육

노회는 사역 준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직제 사역 지망생과 후보생이 교회에서의 봉사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로 반인종차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훈련은 노회가 정하는 주기와 방식에 따라 제공되며, 총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G-2.06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준비

G-2.0601 목회 준비의 성격과 목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 받으려는 이는 노회의 지도 하에 사역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과, 또 그들의 당회, 개체교회와 언약관계를 맺어야 한다. 언약 관계는 지망과 후보의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 노회는 목회 후보생 준비를 담당하는 노회 기구의 구성원들(지망생과 후보생의 연락관으로 봉사하는 이들을 포함함)을 위한 교육을 보장해야 하며, 이 교육이 최소 3년마다 완료되고 노회 회의록에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차별 없는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반인종주의, 상호문화 역량, 암묵적 편견 인식, 그리고 LGBTQIA+ 지망생과 후보생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G-2.0603 지망 단계의 목적

조사 단계의 목적은 교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직제 사역자로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 부르심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여 노회가 지망생의 직제 사역 적합성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에는 성 관련 위법행위 주제를 포함하는 경계 훈련 인증서, 아동 성적 학대 예방 훈련과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는 반인종차별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회는 조사 절차 시작 시 지망생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노회는 지망생의 조사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및 직업적 목록을 포함한 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G-2.0606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준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은 노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협의회(ATS) 인가 신학 기관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 교육 과정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학습,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한 구약과 신약의 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준비하는 이들은 성적 비행을 주제로 포함하는 경계 훈련을 수료해야 하고, 아동 및 청소년 학대 예방 훈련을 수료해야 하며, 최소 36개월마다 갱신하는 이 훈련들의 수료증을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해서 승인해야 한다.

G-2.0606 노회 돌봄 아래 지도받는 사역 언약 관계에서

G-2.0607 섬김에 대한 최종 평가와 논의

후보생은 그가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의 승인 없이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섬기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 노회는 후보생이 노회의 안수 시험 자격을 갖추고 청빙을 기다리고 있음을 인증한 시기를 기록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e. 후보생의 지혜와 성숙한 믿음, 지도력, 긍휼의 마음, 정직성, 건전한 판단력.
- f. 각 권역에서 인준받은 대학이나 종합대학, 또는 노회가 인정한 해외 동등 학교에서 양호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을 보여주는 성적 증명서.
- g. 신학 교육 기관의 사본으로서, G-2.0606에 명시된 교육 요건에 따라서 모든 학습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보여주고 졸업했거나 졸업에 근접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 h. 시험 자료들. 이들 자료들이 총회가 승인한 표준 안수 시험에서 다루는 부분들을 충족시킨다는 평가서. 이 자료들은 표준 목사안수 시험 또는 담임목사 안수 포트폴리오 중 하나일 수 있다. 후보생의 목사안수 준비를 담당하는 노회 기구와 후보생은 표준 시험과 담임 목사안수 포트폴리오의 가능한 조합을 포함하여 어떤 평가 자료를 사용할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1) 표준 목사안수 시험은 노회들이 구성한 기구에 의해 출제, 시행 및 평가되어야 한다.

(2) 시니어 목사안수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경우, (시니어 목사안수 포트폴리오는) 노회들이 구성한 기구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목사안수 후보생이 작성할 수 있다. 후보생 소속 노회에서 목사안수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는 포트폴리오를 평가한 후, 포트폴리오와 그 평가 결과를 최종 평가를 위해 노회들이 설립한 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시니어 목사안수 포트폴리오 또는 노회가 승인한 기타 시니어 평가는 노회들이 구성한 기구가 수립한 문화적으로 역량 있고 편견을 인식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노회들은 평가 관행이 일관되고 투명하며, 반인종주의, 상호문화 역량, 그리고 형평성 있는 평가 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보장해야 한다.

G-2.07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안수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

G-2.1001 에 따라 섬기고자 하는 사역장로는 노회가 정한 준비 절차와 지침 사항을 받아들여 특정 파송 사역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한적인 목회 사역을 위한 사역 장로의 교육 및 준비에 관한 교단의 기본 교육 요건을 이수하는 것, 반드시 석사 수준일 필요는 없는 학업, 그리고 장로교 정치, 개혁신학의 예배와 성례전, 개혁신학 신학, 구약과 신약의 성경 해석, 설교, 기독교 교육, 목회적 돌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인 기독교 교육자와 공인된 기독교 준교육자는 성적 비행 주체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이수 수료증을 소속 노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수료증은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해서 승인해야 한다. 노회는 사역 장로인 공인 기독교 교육사가 G-2.1002 및 G-2.1004에 따라서 심사 및 전권위원회되는 경우, 전권위원회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인 신앙, 파송 사역에 대한 동기, 노회가 정한 지침 사항과 관련해, 노회는 사역 장로를 심사해야 한다. 특정 사역에 파송되었다가 나중에 사역을 그만 둔 사역 장로는 사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단에 이름을 계속 올릴 수 있으나, G-2.1001에 명시된 직무들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 다만 노회가 이들을 개체교회 또는 사역에 다시 파송하면 이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G-2.1101 공인 교회 사역의 형태

사람들은 개체교회, 공의회, 교회 산하 조직체에서 사역하도록 인증받고 청빙받아 직원으로 섬길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애써야 하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 소속 당회와 노회는 총회가 승인한 교단 인증 조직의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이를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교단 인증 조직을 통해 인증을 받은 이들의 명단을 총회의 해당 조직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직은 그 명단을 각 사람들이 속해 있는 노회의 정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체교회, 공의회 및 교회 관련 기관에서 사역하도록 인증받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직원 직책을 맡아 사역하는 사람은 인증 기관과 노회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훈련과 계속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G-3.0106).

G-2.1103 기독교 교육사

기술 및 훈련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개체교회나 공의회 교육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인증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성경 해석, 개혁 신학, 예배와 성례전, 인간 발달, 신앙 성장, 종교 교육 이론과 실행, 미국장로교 정책, 프로그램, 사명에 대한 기술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노회의 책임

노회는 공인 기독교 교육사, 공인 기독교 준교육사의 급여와 혜택에 관한 최저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사역을 감독하는 노회의 관련 부서와 이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G-3.0307). 노회 관할권 하에서 교육 사역을 하는 임기 중에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공인 기독교 교육사가 사역 장로이면, 노회의 모든 회의에서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다. **공인 기독교 교육자와 공인된 기독교 준교육자는 성적 비행을 주제로 포함하는 경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수료증을 자신이 섬기는 노회에 제출해야 하며,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노회는 이 두 훈련 과정 수료 증명서를 국가 인증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G-3.0106 사명의 수행

교회가 사역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형태와 구조는 사명에 의해 결정된다. 수행은 공의회가 그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사명의 수행을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에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증거할 수 있다.

당회 위의 공의회는 정책과 절차 실례를 모아 참고 자료집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실례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실행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실행은 공의회의 재량이다. 또한 이와 같은 참고 자료집은 특정 공의회의 사역을 향상시키거나 견고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 공의회는 해당 공의회 사역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그 사역을 이끌어갈 사명 수행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모든 공의회는 다음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성적 비행 정책(**최소 36개월마다 경계 교육 요건을 포함해야 함**), 괴롭힘 정책, 아동 학대 정책, 취약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보호 정책(**최소 36개월마다 학대 예방 교육 요건을 포함해야 함**), 괴롭힘 정책, 그리고 반인종차별 정책. **여기에 열거된 정책은 최소 요구 사항이며, 공의회 운영 지침서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을 모두 망라한 목록은 아니다.** 각 공의회의 정책에는 성적 비행을 포함하는 경계 훈련과 아동 성적 학대 예방 훈련에 대한 요구 사항이 최소 36개월마다 회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대회와 노회의 반인종차별 정책에는, 교역장로, 파송 사역장로 및 회중, 공의회, 교회 관련 기관에서 섬기도록 인증받고 부름받아 직원으로 일하는 이들, 그리고 해당 관할권 하에 있는 지원자와 후보생을 대상으로 36개월에 한 번 이상 실시하는 필수 교육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신실한 지도력과 책무성, 그리고 교회가 공공신학과 윤리적 지도력에 대해 지니는 헌신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교육에는 측정 가능한 성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의회는 그 임무의 일부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체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조직체가 해당 공의회의 책임 하에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공의회는 서로 책임, 권리, 권한을 공유하고 있기에, 사명의 수행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성이 드러난다(F- 3.0203). 하위 공의회는 그 구성원이나 대의원을 파견하여 상위 공의회 사역의 기획과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명, 예산, 직원 관리, 평등 고용, 공정한 보수 같은 사안과 관련해 조직 간의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조달 역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교회의 어느 부분이라도 전체 교회 사명의 청지기직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체 교회의 하나됨과 상호의존성을 손상하는 것이다. 사명의 수행을 위한 기금을 사용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에 효율적으로 증거해야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당회 위의 각 공의회는 행정 직원 경비를 포함, 운영 경비 관련 예산을 준비해 채택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그 산하 개별 교회들이 낸 상회비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상회비를 걷어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해당 대회와 총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노회는 그 산하 교회의 당회에 상회비 분담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상회비를 결정하는 당회의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

G-3.0206 교육

당회의 모든 구성원은 성적 비행을 포함한 경계 설정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 및 청소년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이러한 교육의 이수 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교육은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해서 승인해야 한다.

G-3.0301 구성과 책임

노회는 특정 지역 내의 교회들의 연합체로 기능하는 공의회로서 그 지역 내의 모든 개체교회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된다. 노회는 각 당회가 노회에 파송할 대의원으로 몇 명의 사역 장로를 선출해야 하는지 계획하고, 이를 당회에 알려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가 될 수 있으면 동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당회가 적어도 한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규모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F-1.0403과 G-3.0103의 참여와 대표성의 원칙을 반영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노회 임원으로 선출된 사역 장로는 그 임기동안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노회는 노회나 노회 산하 개체교회 내에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 동안, 노회는 해당 사역 장로를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G-2.1001에 따라 제한된 목회 사역을 하도록 파송된 사역 장로는 그 파송이 유효한 기간에 한하여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와 같이 파송된 사역장로는 이 조항에 따른 유효한 파송 기간 동안에만 노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노회의 최소 구성 요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열 개의 당회와 열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다. G-3.01과 G-3.03에서 노회에 부여된 책임을 고려하여 해당 대회와 총회가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노회는 그 영역 내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개체교회가 증거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개체교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증거의 공동체로 발전한다. 노회 산하 개체교회의 증거 사역을 이끌어 갈 때, 노회는 교회의 표지(F-1.0302),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를 통해 정립해온 정체성(F-1.0303), 교회의 여섯 가지 궁극적 목표(F-1.0304)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노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목회자가 없는 개체교회를 감독하는 일, 목회 관계를 수립하고 해소하는 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인도하는 일, 노회 영역 내 교회의 삶과 사명을 확장하는 범교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 전도, 리더십 개발, 예배, 복음, 행정의 부문에서 개체교회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 b.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전하고 진행한다.** 노회 회의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미조직 친교모임, 새 개척 교회, 개체교회는 아니지만 노회 영역 내에서 만나고 있는 조직체에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성례전 집전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의 만찬을 집전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역 장로를 승인하고 훈련하는 일, 성례전을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여, 성례전이 갖고 있는 일치의 삶을 노회가 살아가도록 노회의 개체교회와 회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실행하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 c.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육성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인 노회 회원을 안수, 입회, 해임, 위임, 제명, 권징하는 일, 평신도 목회자를 제한적인 목회 사역에 파송하는 일, 개체교회의 평화와 조화를 증진하며 개체교회 내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는 일, 개체교회가 관대함, 청지기직, 섬김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일, 개체교회가 사명을 발전시키고 전체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지원하는 일, 해산된 개체교회의 교인에 대한 관할권을 받고 그들의 교인 자격을 다른 개체교회로 옮기는 일, 노회 영역 내에서의 교리적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일, 교회 권징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 미국장로교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회원 명부와 세례교인 명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포용적 다양성에 대한 증언을 함양하는 일이다. 이 책임에 속한다.

G-3.0306 노회 회원 자격

각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회원 자격을 확인하며 이들이 하려는 사역을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노회는 그 영역 내의 사역 승인을 위해 노회가 개발한 서면 기준을 따라야 한다(G-2.0503a).

노회는 각각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노회 가입 후보자들을 교단의 신학, 성례전, 운영체제 측면에서 그들의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확인해야 한다.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교사, 전도자, 행정가, 기관 목사, 그리고 노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기타 사역 형태에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명된 이들은 노회가 승인한 시간과 장소에서 성례전을 집전할 수 있다.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노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노회는 노회의 지리적 범위 밖에 있거나 노회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은 인증된 사역에 목회자가 참여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노회도 다른 노회의 지리적 범위 내에 있으며 다른 노회의 책임 하에 있는 사역에 목회자가 참여하도록 다른 노회의 동의없이 허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두 노회가 모두 허락해야 하며 매년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

노회의 목사 구성원은 성적 비행을 주제로 포함하는 경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하며,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교육을 결정하며, 재량에 따라 이러한 요건의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미국 밖에 있는 교단에서 사역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 사역 기간 중에 노회의 허락 하에 그 교단의 회원 자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이 교단의 노회 회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